



발족식 및 창립보고회

국회입법감시단

“20대 국회 개원 100일, 의원 입법 발의 현황과 문제점”

일 시 | 2016년 9월 7일(수) 오후 2시

장 소 | 유네스코한국위원회 대회의장

주 최 | 국회입법감시단

【 프 로 그 램 】

시 간		내 용	비고
13:30~14:00	30'	등록	
제1 세션. 발족식			
14:00~14:10	10'	개회 (국민의례)	
14:10~14:15	5'	인사말	이영조 경희대 국제대학원 교수/ 국회입법감시단 단장
14:15~14:20	5'	축사	박범진 미래정책연구소 이사장/ 前 국회의원
14:20~14:25	5'	국회입법감시단 발족 선언문 발표	조승수 청년이만드는세상 대표 백경훈 청년이여는미래 대표
14:25~14:30	5'	국회입법감시단 소개	이옥남 국회입법감시단 총괄간사
제2 세션. 창립보고회 (사회:이영조 경희대 국제대학원 교수/국회입법감시단 단장)			
14:30~14:50	20'	기조발제: 의원입법의 문제점과 개선 과제	이현출 단국대 조빙교수/ 前 국회입법조사처 심의관
14:50~15:00	10'	토론1: 제20대 국회 의원발의 법률안 현황 과 개선방안	이옥남 국회입법감시단 총괄간사
15:00~15:10	10'	토론2: 제20대 국회의 안보 및 국가정체성에 반하는 의안 현황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 원장
15:10~15:20	10'	토론3: 제20대 국회 주요反시장 법안 발의 현황과 개선과제	김영훈 바른사회시민회의 경제실장
15:20~15:30	10'	토론4: 20대 국회, 어찌려고 아무 생각 없이 법 만드나!	조형곤 21세기미래교육연합 대표
15:30~15:40	10'	질의 응답	

【 목 차 】

국회입법감시단

- 국회입법감시단 발족 선언문 ————— 07

발 제 문

- 의원입법의 문제점과 개선 과제 ————— 11

이 현 출 (단국대 초빙교수/ 前 국회입법조사처 심의관)

토 론 문

- 토론 1 ————— 29

이 옥 남 (국회입법감시단 총괄간사)

- 토론 2 ————— 43

유 동 열 (자유민주연구원 원장)

- 토론 3 ————— 53

김 영 훈 (바른사회시민회의 경제실장)

- 토론 4 ————— 59

조 형 곤 (21세기미래교육연합 대표)

‘국회입법감시단’ 발족 선언문

입법권은 국회의 가장 본질적인 권한이다. 법률의 제·개정 및 폐지하는 입법 활동은 국민생활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과 깊이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그러나 지난 19대 국회까지 의원의 법안 발의 행태는 ‘과잉입법’과 ‘졸속입법’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웠다. 이러한 입법 관행을 개선하고, 의원 발의 법안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것은 20대 국회 개혁 과제 가운데 하나이다.

20대 국회는 달라질 것인가. 개원 100일을 맞은 현재 1,700여 건의 법안이 발의되었다. 19대 국회와 비교해 같은 기간 동안 더 많은 숫자의 법안이 제출되었지만, 내용 면에서 19대 국회보다 나아진 것이 없다. 일부 법안은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위축시키고 국민의 생활을 옥조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일부 법안은 국가재정의 건전성은 뒤로 한 채 오로지 여론에만 편승해 복지 폭탄을 남발하고 있다. 심지어는 국가 안보의 근본을 흔들거나, 국가정체성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법안도 있다.

문제는 국회가 이처럼 각종 규제를 강화하고 포퓰리즘을 펼치며 안보를 위협하는 입법 활동을 해도 책임을 물을 제도적 장치가 사실상 전무하다는 점이다. 국회가 스스로 걸러내는 것도 기대하기 어렵다. 자칫 “입법 쓰레기”를 양산할 우려에 대한 자기반성도 없고, 국민 편익·국가 안위와 괴리되는 내용도 국회 차원의 검증과 여과는 이미 실종된 상태다.

국회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헌법적 가치를 존중하는 입법 활동을 통해 국민의 생활을 이롭게 하고, 국민복에 이바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에 20대 국회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헌법적 가치를 존중하고, 국민복리와 국익을 위한 입법 활동을 해 나가는지 감시하기 위해 뜻있는 시민단체들이 모여 ‘국회입법감시단’을 발족한다.

하나, ‘국회입법감시단’은 제 20대 국회의 ‘입법 활동’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우리 헌법적 가치를 존중하는 법안을 발의하는지 모니터링 한다.

하나, ‘국회입법감시단’은 제 20대 국회의 ‘입법 활동’이 국가 안보를 우선 하고, 법치주의를 지켜나가는 법안을 발의하는지 모니터링 한다.

하나, ‘국회입법감시단’은 제 20대 국회의 ‘입법 활동’이 무차별적 복지 포퓰리즘에 치우쳐 국가 재정을 어렵게 만들지는 않는지 모니터링 한다.

2016.09.07

국회입법감시단

〈「국회입법감시단」 창립보고회〉

“20대 국회 개원 100일, 의원 입법 발의 현황과 문제점”

기 조 발 제

[발제 ①]

의원입법의 문제점과 개선 과제

이 현 출
단국대 교수/ 前 국회입법조사처 심의관

1. 의원입법의 실태분석: 19대 국회 중심

1) 의원발의 법률안 비율

□ 19대 국회의 의원발의 법률안 건수는 총 16,675건으로 18대 국회(12,220건)에 비하여 약 1.3배로 급증함

○ 19대 국회에서의 법률안 대표발의 건수는 국회의원 1인 당 약 55.6건임

구분	총 계			의원발의			정부발의		
	제안건수	가결건수	가결률	제안건수	가결건수	가결률	제안건수	가결건수	가결률
13대	938	492	52%	570	171	30%	368	321	87%
14대	902	656	73%	321	119	37%	581	537	92%
15대	1,951	1,120	57%	1,144	461	40%	807	659	82%
16대	2,507	948	38%	1,912	517	27%	595	431	72%
17대	7,489	1,913	25.5%	6,387	1,350	21.1%	1,102	563	51.1%
18대*	13,913	2,353	16.9%	12,220	1,663	13.6%	1,693	690	40.8%
19대**	17,768	2,793	15.7%	16,675	2,414	14.5%	1,093	379	34.7%

*18대 대안반영 법안: 의원 3,227건; 정부 598건

**19대 대안반영 법안: 의원 4,212건; 정부 424건

대안반영은 위원회의 법률안 심사결과 그 법률안의 내용을 일부 또는 전부 반영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는 대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한 법률안으로서 실질적으로는 가결 법률안과 차이가 없음(국회의안정보시스템)

□ 의원발의 법률안 건수의 급증과 더불어 국회 통과법률 중에서 의원발의 법률이 차지하는 비율도 크게 증가함

구분	13대	14대	15대	16대	17대	18대	19대
의원입법	171 (35%)	119 (18%)	461 (41%)	516 (54%)	1,350 (71%)	1,663 (71%)	2,414 (86%)
정부입법	321 (65%)	537 (82%)	659 (59%)	432 (46%)	563 (29%)	690 (29%)	379 (14%)
계	492 (100%)	656 (100%)	1,120 (100%)	948 (100%)	1,913 (100%)	2,353	2,793

□ 그러나 제안건수 대비 가결건수의 비율을 나타내는 가결률은 의원발의 법률안은 18대 대비 약간 상승하였으나 여전히 14.5%로 낮은 수준이며, 정부발의 법률안의 가결률은 점차 낮아지고 있는 추세임

○ 특히 의원입법의 경우 18대 국회에서 13.6%까지 떨어져 의원발의 법률안의 부실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됨

○ 대안반영 비율을 감안하면 우려는 다소 상쇄될 수 있음

□ 의원발의 급증의 원인

○ 입법부 본연의 역할과 의원입법 중요성에 대한 의원 인식이 변화함

○ 외환위기, 양극화, 고령화 등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입법수요 폭증

○ 언론시민단체 등의 의정활동 평가 항목으로 의원입법 발의 건수를 중요하게 다룸

○ 법안발의 정족수 하향조정(20명→10명)과 원내정당화의 영향으로 정당의 정책위원회 등의 조정 없이 법안을 발의하는 경향임

2) 의원발의 법률안의 입법형태 및 입안과정

□ 의원발의 법률안은 ‘일부개정법률안’이 86.1%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제정 법률안이 9.9%를 차지함

구분	제정	일부개정	전부개정	폐지
의원발의	1647 (9.9%)	15,623 (93.9%)	86 (79.6%)	19 (79.2%)
정부발의	447 (21.3%)	1,012 (6.1%)	22 (20.4%)	5 (20.8%)
계	2094 (10.6%)	16,635 (84.2%)	108 (3.1%)	24 (1.3%)

□ 의원발의 법률안 개정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개정 조문이 1-2개인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54.7%), 개정조문이 5개 이상인 경우(22.6%)가 그 다음을 차지하고 있음(17대 국회의 예)

구분	자구수정	개정조문 1-2	개정조문 3-4	개정조문 5 이상	제정·폐지
건수(비율)	172 (2.7%)	3,491 (54.7%)	687 (10.8%)	1,446 (22.6%)	588 (9.2%)

□ 의원발의 법률안 성안과정의 충실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법제실의 법제심의 과정을 거쳤는지 여부와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검토함 (17대 국회 사례)

○ 법제심의를 거친 경우는 37.9%에 불과하며,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은 경우가 77.8%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

법제심의 여부		비용추계 유무	
예	2,423 (37.9%)	비용추계 첨부	875 (13.7%)
		미첨부 사유첨부	495 (7.9%)
아니오	3,964 (62.1%)	비용추계 미첨부	4,972 (77.8%)
		기타(비법률안 등)	45 (0.7%)

○ 법제심의를 거친 법률안 중에서 원안가결, 수정가결, 대안폐기 등으로 처리된 법률안은 총 973건으로 그 통과율은 38.47%를 차지하고 있음

□ 법제심의를 거치지 않거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은 법률안이 많은 것은 입법과정의 부실과 낮은 법안 가결률을 초래하는 원인의 하나로 분석됨

○ 이 같은 점은 17대 국회 의뢰법률안에 대한 참고의견의 내용에서 확인됨(의뢰법률안 2,423건 중 참고의견을 송부한 경우는 669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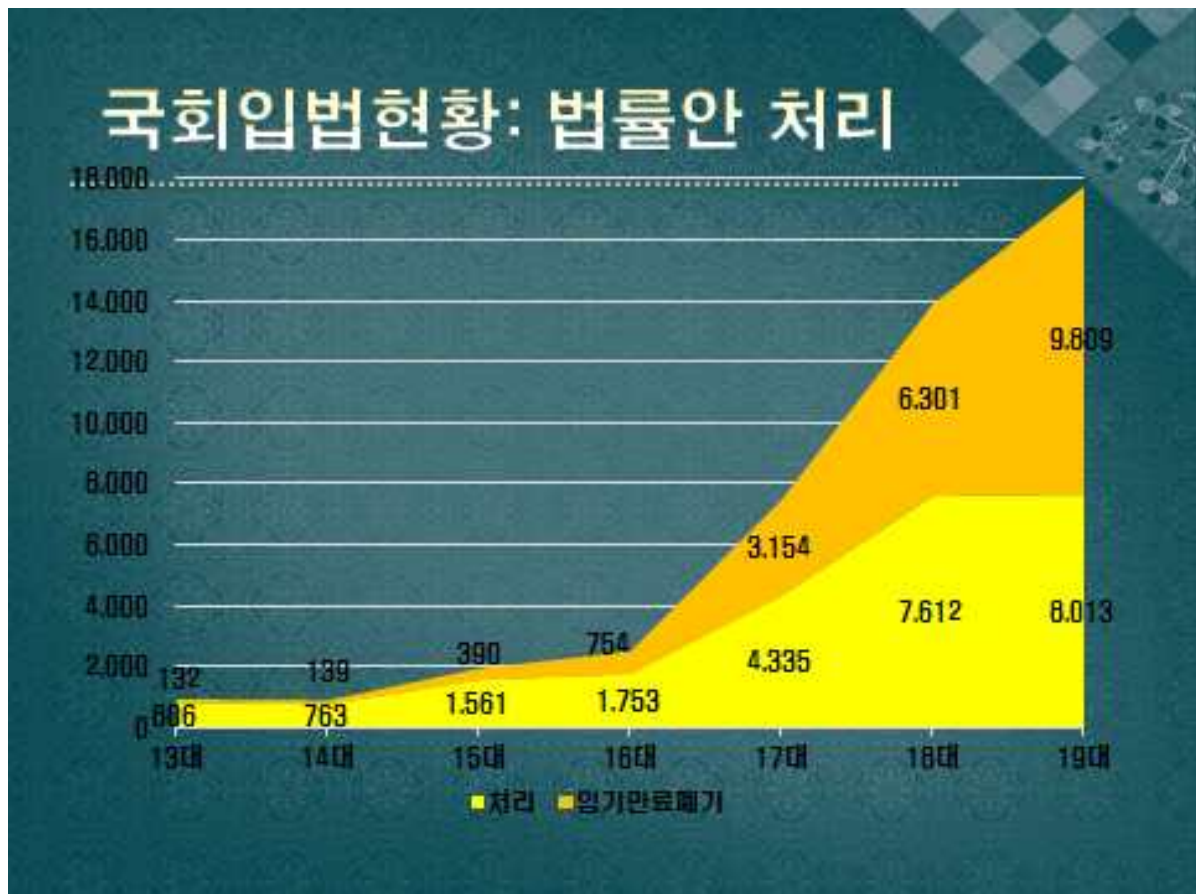
- 그 참고의견의 주요내용은 법의 실효성 확보곤란, 법해석의 착오 또는 오해, 위헌소지, 다른 법에 규정 또는 다른 법과의 충돌 등으로 나타나고 있어 법안 성안과정의 정치함이 요구된다고 할 것임

3) 의원발의 법률안의 심의과정

□ 의원발의 법률안의 처리결과를 보면 ‘임기만료 폐기’가 가장 높은 63.5%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대안 반영’이 27.3%를 차지하며, 원안가결은 2.4%, 수정 가결은 4.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구분	원안가결	수정가결	대안반영	부결	폐기	철회	기타
의원발의	1,646 (2.4%)	763 (4.9%)	4,212 (27.3%)	1 (0%)	9,809 (63.5%)	172 (1.1%)	26 (0.2%)
위원장	1,275 (99.3%)	5 (0.4%)		1 (0.1%)	3 (0.2%)		
정부발의	129 (11.8%)	250 (22.9%)	424 (38.8%)	1 (0.1%)	288 (26.3%)		1 (0.1%)

□ 법률안을 처리된 것과 임기만료 폐기된 것으로 나누면 다음의 그림과 같음



□ 의원발의 법률안의 처리기간은 정부발의 법률안의 두 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17대 기준)

구분	건수	평균(일수)
의원입법	6,387	449.54
정부입법	1,102	231.53

□ 심의과정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이유는 상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일반폐기시키는 비율이 5% 내외로 낮기 때문이라 평가할 수 있음

- 16대 국회 일반폐기: 126건(5%)
- 17대 국회 일반폐기: 420건(5.6%)

4) 의원발의 법률안의 내용분석

□ 의원발의 법률안의 유형

○ 정부와의 협력하에 발의한 법률안: 개혁입법 등 시급한 현안에 대하여 정부의견을 의원입법 형식으로 발의

- ‘종합부동산세법’,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등

○ 특정지역 지원을 위한 선심성 법률안

- 남해안균형발전법안, 군사시설인근지역 개발 및 지원법안 등

○ 쟁점사안에 대한 중복발의

- 산업자원: 지식재산법안, 지식재산기본법안 등

- 교육과학: 영어교육진흥법안, 영어교육 지원 특별법안, 영어교육진흥특별법안 등

○ 시행령 등 하위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는 전환입법

- 농작물재해보험법중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으로 위임된 보험대상 농작물과 보상 자연재해의 범위를 법률로 규정

○ 기금·특별회계 설치, 조직신설 및 기존조직의 법인화 등을 위한 법률안

- 방사성폐기물 안전관리 기본법안: 방사성폐기물 안전관리 기금설치

- 교정청법안: 교정청 신설

2. 주요국 의원입법 제도

1) 미국

가. 의원입법의 현황과 특징

□ 미국의회 입법실적¹⁾: 참고

□ 미국의회 입법실적의 특징

- 발의율은 높으나 가결율은 매우 낮음
 - 발의법률안의 최근 8년간의 평균 가결율을 보면 상원의 경우 3%를 넘지 못하며, 하원의 경우 108대 의회에서 6.6%를 보이거나 109대 의회에서는 4.6%를 나타냄
- 그러나 중요한 법안(Major Bills)의 경우 제출 법률안의 70%가 양원을 통과하고 60%가 법이 됨

나. 의원입법 가결률이 낮은 원인

- 제한 없는 발의와 복잡한 심의 과정
 - 법안발의에 관한 형식적 제한(의원 수 등 발의요건)이 없음
 - 법안의 제출, 위원회 심사, 본회의 심의, 상하 양원에서의 심의, 양원협의회 등 매우 복잡한 과정을 거치면서 폐기되는 경우가 많음
- 정책현안에 대한 다양한 대안과 지역구 및 이익집단의 이익대변
 - 주요한 쟁점에 대해서는 다수의 의원에 의한 유사한 법안의 제출
 - 법안에 대한 일반의 지지도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지역구민에게 지역구 문제를 위해 노력한다

1) 2010년 이전 자료

회기	상원			하원		
	발의 건수	가결 건수	가결률	발의건수	통과건수	가결률
107대 (2001-2002)	3,189	71	2.2%	5,767	312	5.4%
108대 (2003-2004)	3,036	148	4.9%	5,432	356	6.6%
109대 (2005-2006)	4,122	124	3.0%	6,434	294	4.6%
110대 ¹⁾ (2007-2008)	3,411	65	1.9%	6,771	188	2.8%

출처: Congressional Record-Daily Digest, Resume of Congressional Activity 자료 재구성

는 것을 보이기 위해 제출하는 법안이 많음

☞ 이러한 법안의 대부분은 청문회가 열리기 전 단계에서 후속심의를 들어가지 않고 폐기되는 경우가 대부분임

☞ 109대 하원 법안의 88.6%(5,698건)가 청문회 전 단계에서 폐기됨

109대 상원 법안의 88%(3,626건)가 청문회 전 단계에서 폐기됨

□ 복수상임위원회 공동회부(Joint Referrals)

○ 법안이 복수의 상임위원회에 회부되는 경우 상임위간에 소관사항을 둘러싼 분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심의를 지연시킴

○ 최근에는 의장이 법안의 소관 상임위원회를 결정할 때 1-2 상임위로 한정하는 경향이 많음

□ 상원의 의사결정구조

○ 상원 의사 규칙에 따르면 상원의원은 본회의 토론을 연장할 수 있는 권한과 수정안을 제출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됨

○ 만장일치의 의사정족수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상원 의원 개인이 법률안 통과를 저지할 수 있음

다. 심의과정의 특징

□ 활발한 상임위 활동

○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충실한 상임위 활동

○ 활발한 청문회 활동: 법안을 심사하기 위한 입법청문회(legislative hearings), 정부정책을 감독하거나 정책내용을 감사하기 위한 감독청문회(oversight hearings), 정부 관료나 정책상의 비행을 조사하기 위한 조사청문회(investigative hearings), 정책집행상의 문제점이나 실정을 파악하기 위해 지방이나 산하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현장청문회(field hearings), 정부 고위관료의 인준을 위한 인사청문회(confirmation hearings) 등

○ 미국의회의 청문회는 12개월 내내 진행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미 의회 상원과 하원의 상임위원회가 개최한 청문회는 지난 2007년 총 1,480여건에 이르고 있음

□ 복잡한 심의과정

○ 청문회 후의 축조심사(Mark up), 상임위원회 전체회의, 규칙위원회, 전원위원회, 본회의 등의 절차를 거치며 엄격한 법안심의

○ 법제실(legislative counsel), 의회조사국(CRS), 의회예산처(CBO), 회계감사원(GAO), 위원회 전문 스태프, 의원 개인보좌진 등 다양한 입법지원조직을 통해 의원의 입법활동을 지원함

2) 영국

가. 의원입법 및 정부입법

□ 영국의회의 법률안 발의건수는 미국에 비해 발의건수가 현저히 적음²⁾

○ 영국 하원 의원정수는 646명으로 미국하원 의원정수 435명보다 많을 뿐 아니라 미국 상하원 정수를 합한 535명보다 많은데도 불구하고 법률안 발의건수가 훨씬 적은 것은 내각제라는 정부형태의 차이와 본회의 중심제를 택하고 있는 영국의회 제도의 특성으로 인한 결과임

□ 법률안 발의 건수를 비교해보면 개별의원안이 정부안보다 많지만 가결률이 낮아 실제 법률로 입법화되는 법률안은 대부분 정부발의법률안임

○ 정부안의 가결률은 90%를 상회하는 반면, 개별의원안은 평균 10% 정도임

○ 의원내각제라는 특성상 의원이 개인적 차원에서 발의하는 법률안은 다수당에 의해 구성되는 내각의 동의를 이끌어내지 않는 한 통과되기 어렵기 때문임

○ 또한 의안심의과정에서 정부발의 법률안을 우선하여 심의하도록 제도화되어 있으며, 재정관련 법안의 경우 정부안만 발의할 수 있는 등 제도적으로 정부발의 법률안의 가결률이 높게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임

나. 입법 과정

□ 영국의회는 본회의 중심주의를 채택하고 있음. 법률안의 기본 방향이 본회의의 독회와 토론과정에서 결정되고 위원회 심사단계에서는 부분적인 수정에 그침

□ 입법과정은 5~6단계의 절차를 거치며 양원 모두 법률 발의를 할 수 있으나 정부발의 법률안의

2) 2007년 이전 자료 참고

회기	정부안			의원안		
	발의 건수	가결 건수	가결율	발의	통과	가결율
2000-2001	26	21	80.8%	63	0	0.0%
2001-2002	39	39	100%	114	8	7.0%
2002-2003	36	33	91.7%	97	13	13.4%
2003-2004	35	33	94.3%	96	5	5.2%
2004-2005	34	20	58.8%	54	0	0.0%
2005-2006	58	54	93.1%	116	3	2.5%
2006-2007	33	29	87.9%	96	4	4.2%

출처: U. K. House of Commons, 각 연도, Sessional Information Digest에서 재구성

각료인 의원이 제출한 법률안은 정부발의 법률안(Government Bill), 개별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은 개별의원안(Private Member's Bill)으로 구분함

재정지출이 필요한 법률안의 경우 각료인 의원만이 발의할 수 있음

경우 대부분 하원에서 발의됨

- ☐ 이러한 과정을 거쳐 양원을 통과한 법률안에 대해 국왕이나 정부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음
법률상 국왕은 법률안에 대한 승인을 거부할 수 있으나 관례상 거부권이 행사되지 않음

3) 일본

가. 의원입법 및 정부입법

- ☐ 내각과 참의원 및 중의원에서 법률안 제출권을 가짐
- 의원 발의 법률안의 경우 중의원에서는 의원 20인 이상, 참의원에서는 의원 10인 이상의 찬성자가 연서하여 발의
- 예산 관련 법안의 경우 중의원에서 의원 50인 이상, 참의원에서 의원 20인 이상의 찬성이 요구됨
- 그밖에 위원회에서 소관 사항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찬성자 필요없이 위원장 단독으로 법률안 발의(국회법 제50조 2항)

법률안의 발의건수는 정부 발의 법안과 의원 발의 법안이 비슷하나 가결률의 경우 정부 발의 법안은 평균 84% 정도이지만 의원 발의 법안은 중의원 30%, 참의원 17% 정도로 정부 발의 법안의 가결률이 훨씬 높음³⁾

나. 입법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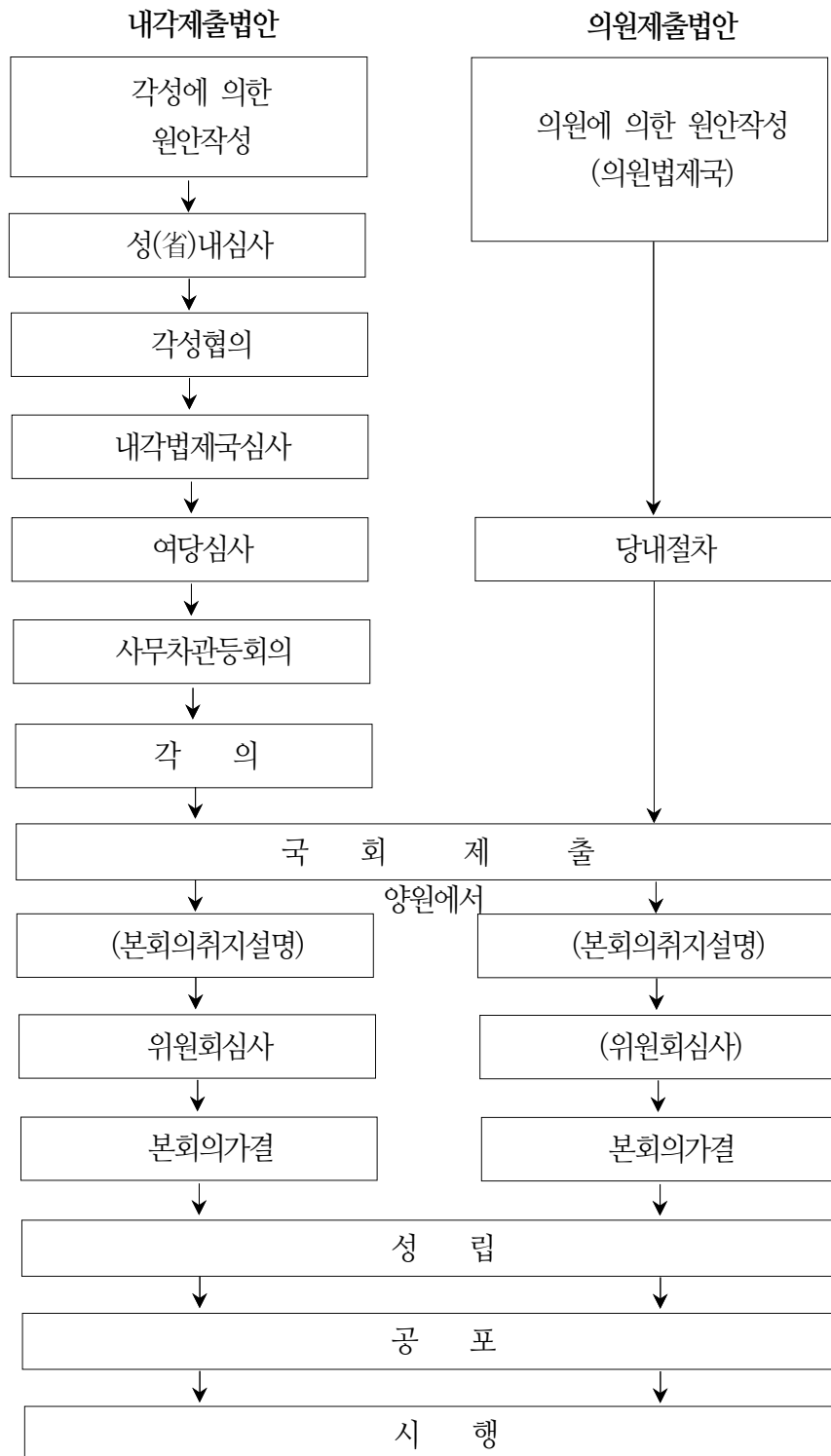
- ☐ 의원입법은 의원이 일정 수 이상 의원의 동의를 얻어 법안을 제출하지만, 소속 회파(교섭단체)의 승인을 얻는 것이 필요함

3) 2008년 이전

년도	정부안			중의원안			참의원안		
	발의 건수	가결 건수	가결율	발의	통과	가결율	발의	통과	가결율
2004	127	120	94.5%	59	14	23.7%	24	1	4.2%
2005	89	75	84.3%	39	17	43.6%	10	1	10.0%
2006	91	82	90.1%	40	10	25%	21	4	19.0%
2007	97	89	91.8%	54	19	35.2%	14	3	21.4%
2008	80	63	78.8%	32	14	43.8%	27	3	11.1%

○ 한국의 경우 원내정당화의 흐름으로 의원 자율성이 높아지면서 정당내의 조정과정이 크게 약화되었으나 일본의 경우 당내 조정과정을 통하여 정당의 노선과의 통일 여부, 그리고 법제 완성도를 높이는 기능을 함

□ 내각제출 법안과 의원제출 법안의 과정



□ 의원제출 법안의 주요내용

- 국회 또는 정당관계법
- 선거구로부터 요청받은 재해대책법 또는 지역진흥법
- 지원을 받은 이익집단 등으로부터 요청받은 자격법 등
- 야당의 경우 정책의 선진성을 홍보하거나 내각제출 법안에 대한 대항법안으로 제출

3. 의원입법의 질적 개선방안 검토

1) 의원입법 급증에 따른 문제점

□ 국민 의견수렴절차 생략으로 인한 국민반발

-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법률안이 입법예고·공청회 등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없이 추진됨으로 인하여 국민반발 초래
- 공청회, 입법예고제 등이 실효성을 갖지 못함으로 인하여 무책임한 법안 남발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군필자 채용 가산점 관련 등 사례

□ 국가재정에 과도한 부담을 주어 집행이 곤란한 법률 성립

- 예산조치가 필요한 법률안에 대해 국회법에 따라 소관부처의 의견은 듣고 있으나 기획예산처의 의견을 듣는 경우는 많지 않음
- 예산수반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비용추계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가 많음
-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안: 강제동원되었다가 돌아온 생존자에게 1인당 500만원 위로금 지급, 약 2천억원의 추가재정 소요 발생(2007.7.3 통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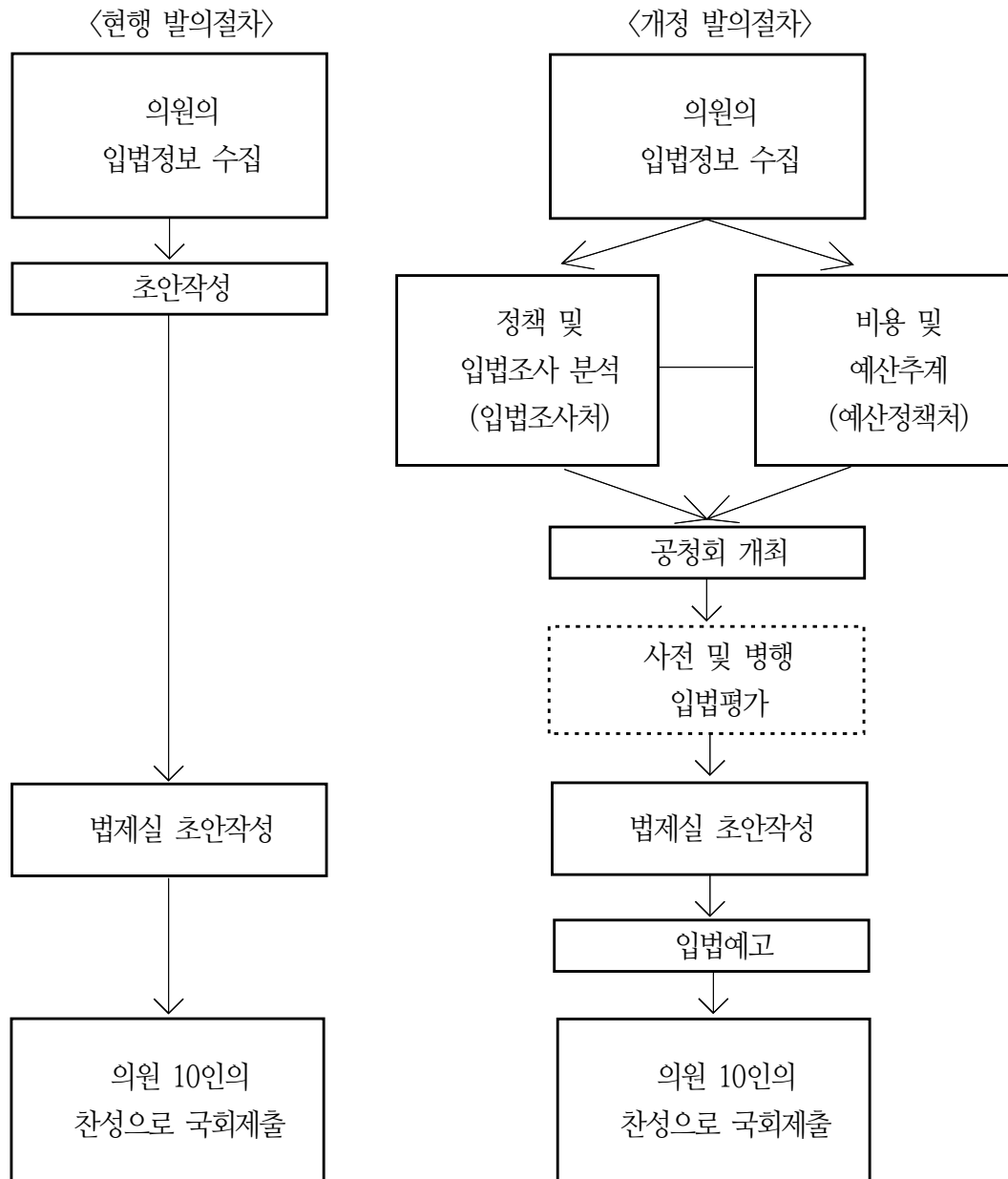
□ 부처협의 우회 목적의 “무늬만 의원입법”의 증가로 국회 권위 실추 및 정부부처 갈등 증폭

- 사실상 정부에서 법률안을 만들고 부처협의 등의 제약을 피하기 위하여 의원입법 형식으로 발의되는 경우 증가
- 이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다는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의 지적이 있었음(06.10.31 법사위 국정감사)

□ 높은 폐기율로 인한 의원입법에 대한 신뢰 저하

- 의원발의안이 폐기율이 높은 이유 중의 하나가 정부안에 비해 지역·직능 등 특수이익을 대변하는 법률안이 많아 이에 대한 비판제기
- 특정 사안에 대한 중복 발의가 많아 법안 제출단계에서의 투명성 강화가 요구됨

2) 법안 발의절차 개선방안



□ 비용추계, 법제실 법제자문 의견 제출 의무화

- 비용추계절차, 법제자문 절차는 필수절차로, 조사분석 의뢰는 임의절차로 규정
- 법제실 법제자문 의견 제출을 의무화함으로써 법의 실효성 확보곤란, 법해석의 착오 또는 오해, 위헌소지, 다른 법에 규정 또는 다른 법과의 충돌 등 다양한 하자를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법안의 완성도 제고
- 국회법 제79조의 2의 개정 또는 제79조의 3 신설 및 규칙제정

□ 공청회실시

○ 공청회의 경우 16대에 비해 17대 국회에서 개최 건수가 증가하는 등 점차 활성화되어가고 있으나, 법안 준비단계의 필수코스로 정착되지는 못한 실정

○ 조사분석 및 비용추계에 관한 검토 이후 전문가 및 이해당자자로 구성된 공청회를 실시하도록 규정 신설하고 위원회 심의시 참조

○ 이해당사자 대립 사안이나 비용 추가소요사안 대상으로 실시

○ 청문회와 구분하여 법안제출 전 단계에서 “이해관계자와 학식·경험있는자”에 의한 공청회를 별도로 규정하고(국회법 제64조 개정), 청문회는 법안 심의단계의 과정으로 구분

□ 입법평가제 도입

○ 입법의 홍수, 과잉입법 등의 상황속에서 현실적합성, 집행가능성, 체계적합성 등의 요건을 갖춘 ‘좋은 법률’을 만들기 위한 국회차원의 선구적 노력이 요구됨

○ 입법평가는 법률의 제정·개정에 따른 영향을 사전 및 사후에 분석하고 평가하여 그 결과를 입법에 반영하는 것으로 법률의 입안에서 초안 작성, 법률로서의 시행 이후 국민에게 미치는 효과까지를 분석·평가하여 보다 나은 대안을 제시하도록 하는 제도

○ 독일은 연방 수상청 산하에 국가규범통제원을 설치(2006)하여 입법평가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예산통제 및 졸속입법이나 부실입법을 억제함으로써 의원입법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있음

○ 시범적으로 국회입법조사처 내에 입법평가센터를 설치하여 민간전문가와 공동으로 주요 법률안에 대한 입법평가 시도

□ 입법예고제 시행

○ 현행 국회법 제82조의 2에 규정되어 있으나 국회규칙이 마련되지 않아 실시되지 않고 있는 입법예고제의 시행 및 활성화를 통해 입법과정에 대한 대국민 여론 수렴 가능

○ 정부입법의 경우 입법예고제도가 의무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의원입법의 경우에는 사실상 시행되지 않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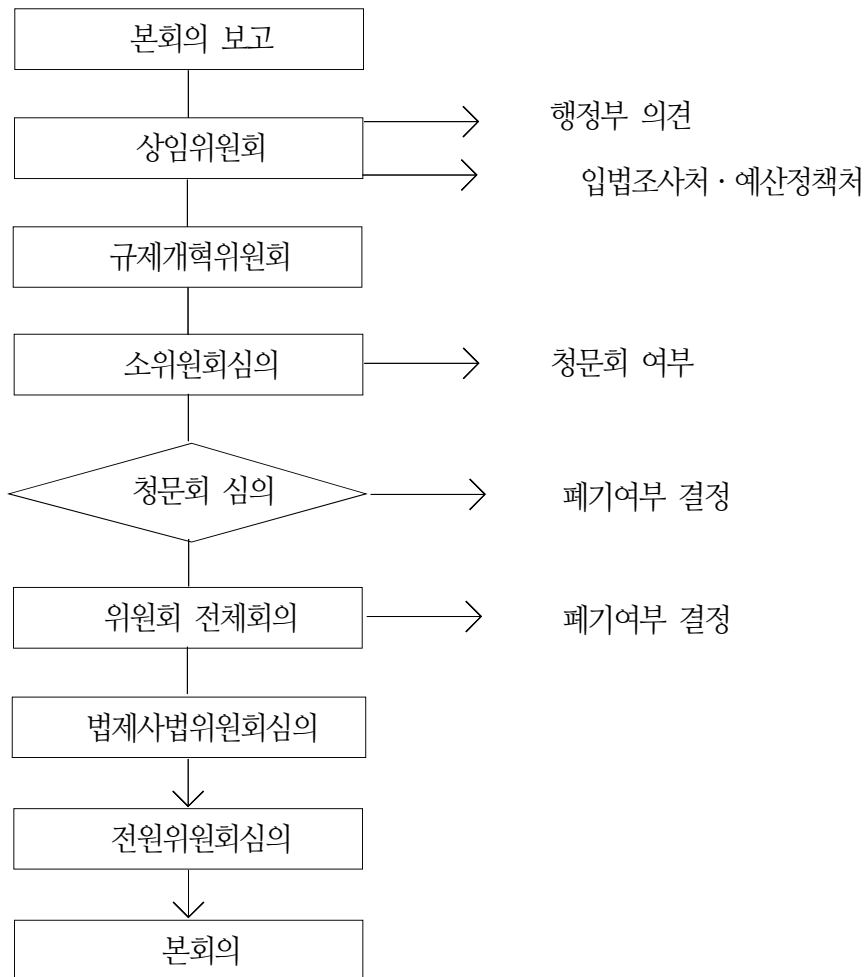
○ 모든 입법에 대한 입법예고제를 의무시행함으로써 의원에게는 법안제출에 책임성을 강화하고, 이해관계 국민에게는 알권리를 강화할 수 있음

○ 입법예고제를 의무 사항으로 규정하고 관련 국회 규칙을 제정하는 등 제도 개선을 통해 입법예고제를 시행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국회법 제82조의 2 임의규정을 의무규정으로 개정, 입법예고 규칙 제정을 통해 방법과 절차 규정

○ 법 개정 없이 입법예고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국회 홈페이지 “법률관련 정보” 코너에 ‘국회통과 새법률’, ‘최근접수 법률안’ 등의 코너가 있는데, 이에 부가하여 ‘최근제출 법률안에 대한 국민의견 접수창구’를 개설하여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안(국회 홈페이지 별도 메뉴 구성 등)을 검토해 볼 수 있음(즉각 실행 가능)

3) 심의절차 개선방안



□ 행정부, 국회전문기관 의견 수렴 강화

- 의원입법에 대한 정부의 신속한 의견 수렴
- 제출된 법안에 대해 국회입법조사처의 타당성 검토(법률안이 시행된 후의 국민에게 미치는 효과 등에 대한 평가, 사회현실과의 적합성 여부 등), 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 타당성 검토 등을 받아 위원회 심사에 반영

□ 규제개혁위원회 신설

- 정부는 행정규제기본법(제23조)에 근거하여 정부제출 법안 심의과정에 규제개혁위원회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규제개혁위원회가 정부입법과정에 존치됨으로써 △ 스스로 만든 규제를 스스로 개혁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점, △ 정책변경 후 사후평가와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크다는 점 등의 이유로 국회에 규제개혁위원회를 두자는 의견이 제기됨
- 외국의 사례에서도 규제를 심사하는 위원회가 의회에 상설되어 있는 국가들이 다수 존재함

- 캐나다: 상하원 합동규제심사상임위원회(Standing Joint Committee for the Scrutiny of Regulations)
- 호주: 상원규제위원회(Senate Standing Committee on Regulation and Ordinance)
- 영국: 의회의 규제개혁 전담위원회인 Parliament Committees가 존재, 하원에는 규제완화 개혁위원회(Deregulation and Regulatory Reform Committee), 상원에는 대리권한·규제개혁위원회(Delegated Powers and Regulatory Reform Committee)가 각각 존재

○ 규제개혁위원회를 국회에도 예결위와 같은 형태로 두되, 민간·의원 동수의 위원회 또는 민간전문위원회 형태로 설치 검토

○ 입법권과 정부견제라는 측면에서 타당하며, 자연스럽게 정부규제부문을 통제하고 시대적 과제에 부응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청문회 활성화

○ 국회법에서는 제정법률안 및 전문개정법률안의 경우 공청회 또는 청문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위원회의 의결로 이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제58조 제6항)

○ 그로 인해 사실상 입법 청문회 제도는 사문화되어 시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미국의 경우 입법청문회는 입법 과정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전문가 및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함으로써 입법과정의 내실을 기하고 국민 여론을 반영한다는 취지로 시행되고 있음

○ 입법청문회 활성화를 위해서는 첫째, 청문회를 생략할 수 있는 의결정족수를 높이고, 둘째, 입법청문회 운영에 필요한 상세한 절차를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필요함(법안발의 단계의 공청회와 성격 구분)

○ 현행 의결정족수는 위원회의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능하지만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청문회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 전원위원회 심의 활성화

○ 전원위원회 제도는 제헌국회에서 제4대 국회까지 존치되다가 제5대 국회에서 국회법 개정을 통해 폐지되었음

○ 2000년의 국회법 개정을 통해 다시 도입되었으며(국회법 63조의2), 재도입의 취지는 상임위 중심주의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안건의 심도 있는 심사와 국회의 원만한 운영을 제고하기 위함이었음

○ 재도입 이후 전원위원회가 개최된 것은 2003년 3월 ‘국군부대의 이라크파병 동의안’을 처리하기 위한 것이 유일한 사례임

○ 전원위원회 제도는 위원회 중심주의로 인해 주요한 법률안의 경우에도 소수의 소관 상임위원회 의원들만 법률안 심의에 참여하게 되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제정된 것임

○ 그러나 사실상 전원위원회가 개최되고 있지 않으므로 주요 법률안의 경우 전원위원회의 개최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방안, 혹은 재적의원 4분의 1이라는 개최요건 외에 운영위원회에도 전원위원회의 개최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국회입법감시단」 창립보고회〉

“20대 국회 개원 100일, 의원 입법 발의 현황과 문제점”

토론

[토론 ①]

제20대 국회 의원발의 법률안 현황과 개선방안

이 옥 남
국회입법감시단 총괄간사

1. 제20대 국회 법률안 발의 현황

□ 2016년 5월 30일 제20대 국회 개원이후 9월 6일 현재 약 3개월 동안 발의된 법률안은 2천049건. 이 중에서 의원발의 법률안은 1천923건이며 정부안은 127건임. 한 달에 평균 640여건 발의된 것임. 이는 1년이면 7천680여건, 4년이면 3만720여건 예상됨.

【표 1】 제20대 국회 법률안 발의 및 처리 현황(2015. 9)

구분	접수	처리	미처리(계류)	비고
예산안 등	12	9	3	
결산 등	1	1		
법 률 안	의원발의	1,922	1,904	
	정부제출	127	127	
	소계	2,049	2,031	
동의(승인)안	37	4	33	
결 의 안	일반	44	26	
	감사요구안			
	소계	44	26	
건의안				
규칙안	1	1		
선출안	4	4		
중요동의	5	5		
의원징계	2		2	
의원자격심사				
기타안				
기타				
총계	2,155	60	2,095	

※ 출처: 국회의안정보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bill/stat/statFinishBillSearch.do>)

□ 제20대 국회 위원회별 법안 제출현황을 보면, 안전행정위원회가 286건으로 가장 많이 발의되었고, 기획재정위원회 253건, 환경노동위원회 205건,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195건, 법제사법위원회

177건 순임.

【표 2】 제20대 국회 위원회별 법률안 처리현황(2015. 9)

위원회	접수	처리	처리내용										미처리 (계류)	비고
			계	법률반영			계	법률미반영						
				가결		대안 반영		부결	폐기	철회	반려	기타		
				원안	수정									
국회운영위원회	47											47		
법제사법위원회	177											177		
정무위원회	138											138		
기획재정위원회	253	6					6			6		247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71	2					2			2		69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195	3					3			3		192		
외교통일위원회	27	1					1			1		26		
국방위원회	36											36		
안전행정위원회	286	4					4			4		282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20											120		
산업통상자원위원회	95											95		
보건복지위원회	198	1					1			1		197		
환경노동위원회	205	1					1			1		204		
국토교통위원회	137											137		
정보위원회	2											2		
여성가족위원회	24											24		
미확정	38											38		
총계	2,049	18					18			18		2,031		

※ 출처: 국회의안정보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bill/stat/statFinishBillSearch.do>)

2. 제20대 국회 의원발의 법률안 분야별 분류

1) 정당별, 의원 개인별

□ 2016년 8월 31일까지 발의된 법안의 정당별 현황을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 의원 113명이 1천 13건을 발의하여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다음은 새누리당 의원 105명이 427건, 국민의당 31명이 298건, 정의당 5명이 35건, 무소속 5명이 22건 순으로 발의했음(【표 3】 참고). 41명은 한 건도 발의하지 않았음.

【표 3】 제20대 국회 정당별 발의건수

(기준: 2016.05.30.~2016.08.31.)

정당명	발의 의원수	발의건수
더불어민주당	113명	1,013건
새누리당	105명	427건
국민의당	31명	298건
정의당	5명	35건
무소속	5명	22건
총계	259,300명	1,795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에서 검색

□ 의원별 발의 건수를 살펴보면 2016년 8월 31일 기준, 최다 발의자는 박광온 의원으로 3개월 동안 70여건을 발의했고, 주승용 의원으로 51건, 이찬열 의원 35건, 최도자 의원 33건, 안규백 의원 30건 순 임(【표 4】 참고).

【표 4】 제20대 국회 상위 최다 발의의원 및 발의건수

(기준: 2016.05.30.~2016.08.31.)

연번	의원명	정당명	발의건수
1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70건
2	주승용	국민의당	51건
3	이찬열	더불어민주당	35건
4	최도자	국민의당	33건
5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30건
6	김삼화	국민의당	27건
7	박 정	더불어민주당	26건
8	김도읍	새누리당	25건
8	황주홍	국민의당	25건
10	김관영	국민의당	24건

※출처: 바른사회시민회의(2016. 8),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검색

□ 최다 발의 상위 3명의 의원은 모두 재선이며 이들 중 일부는 제19대 국회에서 발의했던 법안과 유사한 법안을 발의했음. 박광온 의원의 경우, 발의 70건 중 19건(약 27%)이 19대 국회에서 발의한 법안이며 주승용 의원은 50건 중 5건(5%), 이찬열 의원은 35건 중 9건(25.8%)이 제19대 국회에서 발의했던 법안임(【표 5】 참고). 최도자 의원의 경우, 33건 중 27건이 자구 수정 등 단순 개정 조문 법률안임.

【표 5】 최다 발의의원 중 19대 발의법안 대비 유사 법안⁴⁾

(기준: 2016.05.30.~2016.08.31.)

연번	의원명	19대 발의법안 대비 유사 법안	비율
1	박광온	2000780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0078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0783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00930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0093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0934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0093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1096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01099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0110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1105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11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01107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1109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111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01115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01116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0112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1132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200113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1180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0118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01422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01424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1430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9/70건 (27.1%)
2	주승용	2000179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027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3/51건 (5%)

4) 박광온 의원 19대 법안 발의 41건 중 19건 20대 법안 유사, 주승용 의원 19대 법안 발의 156건 중 3건 20대 법안과 유사, 이찬열 의원 19대 법안 110건 중 9건 20대 법안과 유사.

		200143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	이찬열	2000006 민법 일부개정안 2000010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2000092 유료도로법 일부개정안 2000093 국경일 및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2000094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안 2000706 학교도서관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00709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000716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0721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9/35건 (25.8%)

※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

2) 내용별 분류

□ 2016년 7월까지 발의된 법안을 내용별로 분류하면 1천116건 중 규제관련 법안은 540여건으로 이는 전체 법안의 48%에 해당함. 반면, 규제완화 및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은 약 55건으로 이는 전체 발의 법안의 4.9%에 불과함(【표 6】 참고).

【표 6】 제20대 의원발의 법안 성향 분석

(기준 2016.07.29.)

구 분	총계	경제				정 치 개 혁	경제·정치개혁 外									기 타
		계	규제 완화 및 경제 활성 화	규제 신설 및 강화	기타		일반규제		과거 사	지원		복지	안보	안전		
							완화/ 폐지	강화/신 설		일 반	농어 촌					
건	1,116	183	55	116	12	63	140	284	18	95	26	151	13	100	81	
%	100	16.4	4.9	10.4	1.1	5.6	12.5	25.4	1.6	8.5	2.3	13.5	1.2	9	7.3	

※ 철회 15건 제외. 출처: 바른사회시민회의(2016. 7)

□ 여소야대 정국에서 새누리당은 노동개혁 4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개혁특별법 등 경제활성화법을 중심으로 처리방침을 세웠고, 야3당은 경제민주화 법안(집단소송법, 최저임금법 등)을 우선적으로 처리할 것을 표명함. 일부 경제활성화법 및 경제민주화법의 경우 유사법안이 다수 발의되어 대안반영폐기 처리가 예상됨. 「법인세법일부개정안」의 경우, 현재 13건이 발의됨.

3) 제20대 국회 의원발의 법률안의 예상되는 문제점

① 포퓰리즘 법안 양산에 따른 대안반영폐기와 임기만료폐기

□ 그동안 국회는 사회적 이슈가 발생할 때 마다 의원들이 유사법안을 다수 발의했음. 예를 들어, 최근 국회의원 보좌관 친인척 채용이 문제가 되자 관련된 유사법들이 여러 건 제출되었고, 공정거래 위원회의 전속고발권, 법인세 인상, 가습기 살균제 사건 관련 법안 등 사건 사고에 따른 유사법안의 제출이 예상됨.

□ 이러한 법안들은 위원장안으로 통합되어 대안반영처리될 것임. 또한 무분별하게 발의된 다수의 법안들은 국회 회기 내에 처리되지 않으면 임기만료폐기 될 것 임

② 부실입법, 졸속입법의 우려

□ 의원입법이 소속 정당이나 일부 계층, 단체 등을 위해 오남용 될 수 있는 위험성도 높아짐. 의원입법에는 의원 개인이 발안하는 것과 정당의 정책에 의해 발안하는 것이 있음. 후자의 경우, 여당 안은 대부분 정부발의 법안이 됨. 의원개인에 의한 법률안은 내용적으로 특정지역·특정업자 보호를 위한 법률안 또는 소수파가 많은 혁신 정당의 특정계급 보호를 위한 법률안이 많기 때문에 국회법에 의해 발안 및 수정동의 등에 일정한 요건이 부과되기도 함⁵⁾.

□ 반대로 특정 집단이나 국가 기관에 대한 권한 축소 등 국민 다수의 필요나 동의에 의해서라기 보다 소수 정당의 이해관계에 의해 발의되는 법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도 필요.

③ 실적 쌓기 구태

□ 여전히 다음 총선에서 지역구 및 유권자들에게 제시할 일명 ‘실적쌓기용’ 법률도 다수 발의 될 것으로 예상됨. 실제 일부개정법률안이 86.1%로 이 중 자구 수정이나 소수의 개정 조문으로 법안 처리에 유리한 법안으로 처리 실적을 높이는 것이 다수임

④ 경제민주화 등 규제관련 법안의 양산에 의한 국민부담

□ 소위 ‘경제민주화’ 법안이라고 분류되는 법안의 다수는 규제관련이 많음. 예를 들어, 유통산업 발전법의 경우 소상공인 및 재래시장보호 명목아래 시행 몇 년이 지났지만 당초 예상이나 목적과는 달리 많은 국민들이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음.

5) 지성우(2013)

□ 규제관련 법안은 예산과 같이 명시적으로 비용을 발생시키지 않지만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과정에서 피규제자인 기업이나 개인에게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음. 예를 들어, 과거 문화예술진흥법에 근거한 1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미술품 설치의무 규정은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향만구역 창고 등에서도 고가의 미술품을 설치하도록 요구함으로써 기업에 부담을 초래하기도 함.⁶⁾

3.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한 개선 방안

1) 법적 장치 마련

□ 주요 선진국 의회에서 시행되고 있는 입법평가 제도가 수년째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음. 독일의 ‘법률효과평가(Gesetzesfolgenabschaezung)’이나 미국의 ‘규제영향분석(Regulatory Impact Analysis)’가 그 예임. 법률이 준비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사전입법평가, 병행입법평가제도, 사후입법평가 등 다양한 단계에서의 입법평가가 논의되고 있음.⁷⁾

□ 그러나 제18대 국회부터 2016년 9월 제20대 국회까지 의원입법 영향평가제도 도입에 대한 법률안이 꾸준히 발의되었지만 대부분이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임기만료 폐기됨(【표 7】 참고).

【표 7】 제18대~20대 국회 의원입법평가 제도에 관련된 법률안

연번	제안 대수	발의 의원	발의일자	주요내용	처리 상태
1	18대	권택기	‘08.10.16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의원발의 및 정부제출 법률안과 대통령령 등에 대하여 규제영향분석서 제출을 의무화	임기만료 폐기
2		권경석	‘08.09.05	의원 또는 위원회가 규제의 신설·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의안을 발의 또는 제안하는 경우로서, 당해 규제가 국민의 일상생활 및 사회·경제활동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중요규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규제영향분석서 제출	임기만료 폐기
3		이성현	‘10.04.26	의원발의 법률안의 경우에도 입법예고를 의무화하여 내용과 형식의 완성도를 높임	대안반영 폐기

6) 이혁우·김주찬·김태윤·여차민, ‘의원입법에 대한 규제영향분석의 필요성 연구’, 「규제연구」, 제20권제1호, 2011, 6, p.31

7) 지성우, ‘미래지향적인 의원입법제도 발전방안’, 바른사회시민회의 토론회(2013. 9)

연번	제안 대수	발의 의원	발의일자	주요내용	처리 상태
4	19대	이한구	'13.09.11	규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의원발의 법률안의 경우 규제사전검토서를 첨부하도록 함	임기만료 폐기
5		정희수	'13.10.31	실체적 개정사항이 없는 경미한 법률 개정사항이 있는 때에는 정부의 보고를 받아 위원회 제안으로 이를 일괄 개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률안 발의가 단순히 실적 경쟁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	임기만료 폐기
6		민현주	'13.12.24	의원 또는 위원회가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법률안을 발의 또는 제안하는 경우에는 그 법률안의 시행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분석한 평가자료를 아울러 제출하도록 함	임기만료 폐기
7		안중범	'14.02.10	의원 또는 위원회에서 연간 조세특례금액이 일정액 이상인 조세특례제도를 도입하는 법률안을 발의 또는 제안하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에 관한 전문기관의 평가자료를 함께 제출	대안반영 폐기
8		이완영	'13.12.05	의원 입법의 경우 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서를 반드시 첨부토록 하되, 의원실에서 신속히 법안을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대신 국회예산정책처에 대한 비용추계요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함	대안반영 폐기
9	20대	추경호	'16.07.08	의원 및 위원회가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제안하는 경우 비용추계서와 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를 함께 제출하도록 함	계류
10		김종석	'16.08.23	중요규제를 포함하는 의원입법에 한하여 규제영향분석을 함께 제출	계류

※출처: 바른사회시민회의(2016. 9)

□ 입법평가 관련 법안이 현실적으로 처리가 어려운 이유는 1) 규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의원발의 법률안에 의원이 직접 작성한 규제사전검토서를 첨부하도록 할 경우 의원실에 과중한 부담을 주어 의원발의건수가 대폭 감소하는 경향이 예상되기 때문임 2) 규제영향평가를 법률안 심사단계에서 행할 경우 국회 소관 기관 등이 행하는 규제영향평가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와 중복되는 면이 있고, 규제영향평가가 지체될 경우 위원회의 법률안 심사 일정이 차질을 빚을 수도 있음 3) 규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의원발의 또는 위원회 제안 법률안에 대해 원칙적으로 규제영향평가를 의뢰하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안으로서 간사의 합의와 위원장의 동의를 있는 경우에만 이를 거치지 않을 수 있도록 할 경우 규제영향평가 대상 법률안의 규모가 과다해 질 수 있다는 것이 주요 원인임.⁸⁾

8) 진정구, 「국회법 일부개정안(이한구 의원대표발의) 검토보고서」, 국회운영위원회, 2013. 11, pp.9-10

2) 국회 차원의 현실적 대안

□ 국회 소속 기관별 업무 논의 및 제도화 필요성. 규제영향평가의 의뢰대상으로 국회입법조사처가 주로 논의되고 있으나 국회사무처 법제실이나 국회예산정책처 등에서도 담당하는 것이 현실적. 예를 들어, 비용추계절차, 법제자문 절차를 필수절차로 할 경우 국회예산정책처와 법제실이 실무 담당에 적합할 것임(【표 8】 참고). 그러나 이러한 대안도 국회법 개정 사안이므로 쉽지 않을 것이 예상된다.

【표 8】 규제영향평가 업무 수행 시 국회소속기관별 비교

	규제영향평가 업무 수행 시 예상되는 강점
국회사무처 법 제 실	▪ 법제에 관한 전문성을 토대로 의원실 요청에 따른 법률안 입안 및 검토 담당 부서 - 별도의 직제개정 없이 규제영향평가 업무수행 가능 ▪ 법률안 입안 및 검토과정에서 법률안의 내용에 대한 분석·평가 업무 수행 - 「국회사무처 직제」⁹⁾에 따라 상임위원회의 행정입법 분석·평가 업무 수행 중
국회예산정책처	▪ 규제의 사회적·경제적 비용이나 효과에 대한 평가 가능 - 국가의 주요 사업에 대한 분석 및 평가와 법안 비용추계업무 경험 ▪ 규제영향분석과 관련된 각종 보고서 발간 - 2007~2011년까지 정부 규제개혁 평가 등 5건
국회입법조사처	▪ 입법영향분석 업무 수행을 통한 규제영향평가 능력 배양 - 2011년부터 입법영향분석 시범사업 실시 ▪ 국정전반에 관한 조사·분석 기능 수행 - 입법조사회답 등을 위한 다양한 조사·분석 인력 보유

※ 출처: 진정구(2013, 11)

3) 국회의원 입법활동의 정성적 평가기준 마련 시급

□ 현재 국회를 감시하는 시민단체와 언론 매체 등에서 국회의원 입법 활동의 정량적 평가기준에

9) 「국회사무처 직제」 제7조(법제실)

1. 국회의원 또는 위원회가 요청한 법률안의 입안 및 검토
2. 대통령령·총리령 및 부령에 대한 분석·평가
3. 국내외의 법제에 관한 연구
4. 그 밖에 국회의원의 법제활동에 관한 지원

높은 가치를 부여하기보다 정성적 평가에 대한 기준마련이 절실. 법안의 내용과 질, 법률안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이 합리적인지에 대한 일관되고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정기적으로 또 꾸준히 모니터링 해야 함. 특히, 시민단체 등에서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수여하는 입법관련 시상에도 엄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이 요구됨.

〈첨부〉 제20대 국회 의원별 발의건수

(기준: 2016.05.30.~2016.08.31.)

이름	정당	발의건수	이름	정당	발의건수	이름	정당	발의건수
강길부	새누리	5	박맹우	새누리	4	이우현	새누리	8
강병원	더민주	9	박명재	새누리	14	이원욱	더민주	10
강석진	새누리	1	박범계	더민주	10	이은권	새누리	1
강석호	새누리	3	박병석	더민주	5	이은재	새누리	1
강창일	더민주	7	박성중	새누리	3	이인영	더민주	10
강효상	새누리	4	박순자	새누리	10	이장우	새누리	1
강훈식	더민주	2	박영선	더민주	8	이재정	더민주	8
경대수	새누리	7	박완수	새누리	1	이정미	정의당	5
고용진	더민주	8	박완주	더민주	8	이정현	새누리	2
곽대훈	새누리	1	박용진	더민주	22	이종걸	더민주	2
곽상도	새누리	4	박인숙	새누리	3	이종구	새누리	2
권미혁	더민주	9	박재호	더민주	1	이종명	새누리	5
권석창	새누리	2	박 정	더민주	26	이종배	새누리	9
권성동	새누리	4	박주민	더민주	13	이주영	새누리	2
권은희	국민의당	1	박주선	국민의당	7	이진복	새누리	1
권철승	더민주	10	박주현	국민의당	8	이찬열	더민주	35
금태섭	더민주	2	박지원	국민의당	8	이채익	새누리	2
기동민	더민주	6	박찬대	더민주	5	이철규	새누리	2
김경수	더민주	3	박찬우	새누리	1	이철우	새누리	4
김경협	더민주	4	박홍근	더민주	19	이철희	더민주	1
김관영	국민의당	24	배덕광	새누리	6	이춘석	더민주	16
김광림	새누리	3	백재현	더민주	14	이화영	더민주	7
김광수	국민의당	10	백혜련	더민주	4	이학재	새누리	11
김규환	새누리	1	변재일	더민주	12	이해찬	무소속	1
김기선	새누리	3	서영교	무소속	11	이현승	새누리	2
김도읍	새누리	25	서형수	더민주	3	이현재	새누리	2
김동철	국민의당	14	설 훈	더민주	8	이 훈	더민주	4
김두관	더민주	3	성일종	새누리	7	인재근	더민주	13
김명연	새누리	6	소병훈	더민주	11	임이자	새누리	2
김민기	더민주	7	손금주	국민의당	5	임종성	더민주	4
김병관	더민주	5	송기석	국민의당	7	장병완	국민의당	6

이름	정당	발의건수	이름	정당	발의건수	이름	정당	발의건수
김병욱	더민주	9	송기현	더민주	2	장석춘	새누리	1
김부겸	더민주	2	송석준	새누리	5	장정숙	국민의당	2
김삼화	국민의당	27	송영길	더민주	3	장제원	새누리	3
김상훈	새누리	4	송옥주	더민주	8	전재수	더민주	3
김상희	더민주	8	송희경	새누리	5	전해철	더민주	8
김선동	새누리	1	신경민	더민주	7	전현희	더민주	6
김성수	더민주	1	신동근	더민주	4	전혜숙	더민주	10
김성식	국민의당	3	신보라	새누리	2	정갑윤	새누리	2
김성찬	새누리	5	신상진	새누리	10	정동영	국민의당	1
김성태(지)	새누리	7	신용현	국민의당	7	정성호	더민주	6
김성태(비)	새누리	1	심상정	정의당	9	정용기	새누리	1
김세연	새누리	1	심재권	더민주	5	정우택	새누리	7
김순례	새누리	3	심재철	새누리	6	정운천	새누리	5
김승희	새누리	5	안규백	더민주	30	정유섭	새누리	4
김영우	새누리	1	안민석	더민주	8	정인화	국민의당	2
김영주	더민주	3	안상수	새누리	1	정재호	더민주	2
김영진	더민주	5	안철수	국민의당	5	정종섭	새누리	5
김영호	더민주	1	안호영	더민주	2	정진석	새누리	1
김용태	새누리	4	양승조	더민주	16	정춘숙	더민주	6
김정우	더민주	1	여기구	더민주	2	정태욱	새누리	5
김정재	새누리	1	엄용수	새누리	2	제윤경	더민주	8
김정훈	새누리	2	오세정	국민의당	3	조경태	새누리	6
김종민	더민주	3	오신환	새누리	3	조배숙	국민의당	2
김종석	새누리	2	오제세	더민주	12	조승래	더민주	3
김종인	더민주	1	우원식	더민주	14	조원진	새누리	4
김종태	새누리	2	원혜영	더민주	7	조정식	더민주	13
김종희	국민의당	1	위성곤	더민주	11	조훈현	새누리	3
김종훈	무소속	2	유기준	새누리	1	주광덕	새누리	4
김중로	국민의당	7	유동수	더민주	6	주승용	국민의당	51
김진표	더민주	2	유성엽	국민의당	1	주호영	새누리	5
김철민	더민주	5	유승희	더민주	16	진선미	더민주	12
김태년	더민주	11	유은혜	더민주	6	채이배	국민의당	10
김태흠	새누리	3	유의동	새누리	2	최경환	국민의당	1

이름	정당	발의건수	이름	정당	발의건수	이름	정당	발의건수
김학용	새누리	11	유재중	새누리	2	최도자	국민의당	33
김한정	더민주	1	윤관석	더민주	8	최명길	더민주	7
김해영	더민주	23	윤상직	새누리	2	최연혜	새누리	3
김현권	더민주	3	윤상현	새누리	2	최운열	더민주	5
김현미	더민주	15	윤소하	정의당	14	추경호	새누리	9
김현아	새누리	1	윤영일	국민의당	9	추미애	더민주	3
김혜영	더민주	1	윤재옥	새누리	4	추혜선	정의당	2
나경원	새누리	7	윤종오	무소속	3	표창원	더민주	5
남인순	더민주	11	윤종필	새누리	1	하태경	새누리	4
노웅래	더민주	22	윤한홍	새누리	2	한선교	새누리	9
노희찬	정의당	5	윤호중	더민주	18	한정애	더민주	14
도종환	더민주	7	윤후덕	더민주	14	함진규	새누리	8
문미옥	더민주	7	이개호	더민주	10	홍문종	새누리	2
문진국	새누리	7	이동섭	국민의당	11	홍문표	새누리	5
문희상	더민주	2	이만희	새누리	3	홍의락	무소속	5
민경욱	새누리	4	이명수	새누리	11	홍영표	더민주	13
민병두	더민주	6	이상민	더민주	9	홍익표	더민주	21
민홍철	더민주	23	이석현	더민주	1	홍일표	새누리	3
박경미	더민주	15	이언주	더민주	13	황영철	새누리	5
박광온	더민주	70	이완영	새누리	5	황주홍	국민의당	25
박남춘	더민주	12	이용득	더민주	9	황 희	더민주	3
박대출	새누리	1	이용주	국민의당	4	합계		1,795
박덕흠	새누리	6	이용호	국민의당	3			

[토론 ②]

제20대 국회의 안보 및 국가정체성에 반하는 의안 현황

유 동 열
자유민주연구원 원장

I. 문제제기

20대 국회 개원 이후 현재(2016.9.6.)까지 발의된 의안은 2,184건이다. 이 중 안보와 관련된 정보위원회, 국방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관련 의안은 총 56건이다(부록 참조).

이 중 결과적으로 볼 때 안보와 국가정체성에 반하는 성향 등을 띠는 법률개정안으로 결코 통과되어서는 안 될 의안들을 살펴보겠다. 이러한 작업은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의 입법발의가 헌법정신과 질서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적하려는 것이다.

II. 안보 및 국가정체성에 반하는 의안 분석

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2000143)

2016년 6월 8일 윤후덕(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제2조(정의)와 제13조(반출·반입의 승인) 부분을 일부 개정하자는 것이다. 즉 물품 등의 반출·반입의 규정을 명확히 하여 해당 행위의 경우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남북교류협력을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물품 등의 반출·반입을 승인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이다(안 제2조, 제13조 제1항 단서 신설 등).

일부개정법률안의 실제 목적은 대북민간단체의 대형풍선기구 등을 이용한 대북전단 살포행위를 막자는 것이다.

법 개정 이유를 보면, 대북전단살포 행위가 남북화해 분위기와 남북교류협력의 발전을 심히 저해할 수 있고 접경 지역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으며, 이해와 견해를 달리하는 각 집단 간의 충돌과 갈등을 유발하고 있어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 법률안의 문제점은 아래와 같다.

첫째, 헌법에 보장된 사상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조항이다. 대북전단 살포는 북한 동포들에게 반

문명적인 김정은정권의 실체를 알리려는 즉 거짓선동에 세뇌된 북한 동포들에게 ‘진실’을 알리려는 수단이다.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북한당국이 기를 쓰고 신경질적으로 반대하고 반응하는 것은 진실이 유포되는 것이 두려워서이다. 그런데 진실을 알리는 대북전단 살포를 막자는 개정조항은 거짓을 용인하자는 반문명적이고 비이성적 반민족적 행태이다.

둘째, 남북화해 분위기와 남북교류협력의 발전을 저해하는 본질적인 이유는 북한 김정은집단의 핵 실험 및 탄도미사일 발사, 천안함 폭침 및 연평도 포격도발 등 비타협적 군사모험주의노선과 대남도발이지 결코 진실을 알리려는 대북전단이 아니다.

또한 대북전단 살포 때문에 해당 접경 지역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주장은 북한의 공갈협박에 우리정부가 놀아나는 격이다. 그렇다면 북한이 만약 사드를 배치하면 서울을 폭격하겠다고 협박하면, 우리정부는 사드배치를 철회해야 한다는 것인가? 북한의 공갈협박 때문에 진실을 알리는 작업을 외면하다는 것은 대한민국이길 포기하는 것이다.

셋째, 대북전단 살포 때문에 남남갈등(이해와 견해를 달리하는 각 집단 간의 충돌과 갈등)을 유발하고 있으니 전단살포를 차단해야 한다는 주장은 현재 우리사회 내에 만연된 남남갈등의 소재인 사드배치, 한미FTA, 제주해군기지 건설 등을 다 철회해야한다는 주장이나 다름없다.

동 법률개정안은 안보 및 국가정체성에 반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폐기되어야 할 것이다.

〈표1〉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교역”이란 남한과 북한 간의 물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 및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이하 “물품 등”이라 한다)의 반출·반입을 말한다.	2. ----- <u>물품(통화·보조기억매체·광고선전물·인쇄물 등을 포함한다).</u> -----
3. “반출·반입”이란 매매, 교환, 임대차, 사용대차, 증여, 사용 등을 목적으로 하는 남한과 북한 간의 물품 등의 이동(단순히	3. ----- <u>선전 등을</u> ----- ----- <u>풍선기구 등의 이동·수송장비를 이용하</u>

제3국을 거치는 물품 등의 이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u>여 인쇄물 등을 불특정다수에게 살포하는 행위 및 단순히</u> -----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13조(반출·반입의 승인) ① 물품 등을 반출하거나 반입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물품 등의 품목, 거래형태 및 대금결제 방법 등에 관하여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내용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단서 신설>	제13조(반출·반입의 승인) ① ----- ----- -----. -----, <u>다만, 통일부장관은 남북교류·협력을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물품 등의 반출·반입을 승인할 수 없다.</u>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물품 등의 반출이나 반입을 승인받은 자(이하 "교역당사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⑤ ----- -----어느 하나에 <u>해당하거나 해당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와 제6호의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u>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②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2001858)

2016년 8월 26일 이춘석(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23조(직원에 대한 수사 등)를 개정하자는 것이다.

즉 현행법에서 수사기관이 국가정보원 직원을 구속하고자 하는 경우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정보원장에게 미리 통보하고, 수사 개시와 종료 직후 원장에게 그 사실과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법률안은 국가정보원 직원을 구속한 이후에 국가정보원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또한 수사 개시와 종료 직후가 아닌 10일 내에 원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국가정보원 직원에 대한 수사와 구속을 용이하게 하도록 하고 있다. 이 법률안의 문제점은 아래와 같다.

첫째, 타 공무원과의 형평성 차원의 문제이다. 국가공무원법 제58조(직장 이탈 금지) ②항에는 “수

사기관이 공무원을 구속하려면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헌행범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의 법 취지는 국가기밀을 다루는 공무원들의 구속으로 인한 기밀유출 방지 뿐만 아니라 공무원이 구속되어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할 경우 결원보충을 미리 준비할 수 있게 하고, 당해 공무원의 직무상 인계인수 등을 차질 없이 행할 수 있도록 소속기관장의 직원관리를 효율화하여 국정수행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국가정보원 직원들만은 구속할 때에 구속 이후에 통보하자는 것은 명백히 형평성 차원에서 어긋나는 것이다.

둘째, 국가정보원 직원들은 국가안보와 정보전선에 고도의 국가기밀을 다룰 수밖에 없는바 수사나 구속시 국가기밀을 유출되는 것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해당 공무원의 결원에 따라 국가안보정보업무 수행에 공백이 없도록 사전 조치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일반 공무원보다도 더욱 엄밀하게 신분을 보장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개정법률안에서 인신구속을 하는데 사전에 통보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은 넓은 의미에서 안보·정보전선에 부정적으로 작용하는바, **악법 조항**이라 할 수 있다.

셋째, 국가정보원 직원들을 구속 이후에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지 않으면, 다른 공무원들과는 달리 수사기관의 수사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증거인멸 및 도주를 방지할 수 없고 수사 밀행성(密行性)의 원칙에 반할 수 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약하다.

이러한 이유로 동 개정법률안은 폐기되어야 한다.

〈표2〉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3조(직원에 대한 수사 등) ① 수사기관이 직원을 구속하려면 <u>미리 원장에게 통보</u> 하여야 한다. 다만, <u>헌행범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	제23조(직원에 대한 체포 또는 구속 통보 등) ① 수사기관이 직원을 체포 또는 구속한 때에는 <u>지체 없이 원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u> 하여야 한다.
② 수사기관이 <u>헌행범인 직원을 구속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원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u> 하여야 한다.	② 수사기관이 직원에 대하여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에는 10일 내에 원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수사기관이 직원에 대하여 수사를 시작	

한 때와 수사를 마친 때에는 지체 없이 원
장에게 그 사실과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추가 : 5.18 특별법 일부 개정(2000065)

2016년 6월 1일 박지원이 대표 발의한 5.18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한민국 헌법과 사법체계를 훼손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즉각 개정작업을 중단해야 할 것이다.

첫째,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원리는 자유민주주의와 국민주권주의의 발현인데, 5.18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자유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 ‘표현의 자유’를 심각히 제한·침해하고 있다. 토론자는 5.18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접하면서 유신 체제 당시 <긴급조치>를 연상하게 되었다.

<긴급조치>란 박정희 전 대통령이 1972년 제정한 유신헌법 제53조에 기반하여 1호~9호까지 발령되었는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정지시키고 군사독재를 강화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후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임이 수차례 판시(2010년 12월16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2013년 4월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2013년 3월 21일 헌법재판소-긴급조치 1호, 2호, 9호 위헌 결정 등)된 바 있다.

5.18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면, 유신시대 긴급조치를 능가하는 악법이 될 것이며, 대한민국 스스로 자유민주국가임을 포기하는 대표적 법률이 될 것이다. 바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으로 판시받아 폐지될 것이다.

〈표3〉 5.18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긴급조치 제1호 비교

5.18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016)	긴급조치 제1호(1974)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5·18민주화운동에 대한 비방·왜곡·날조 등 금지) ① 누구든지 <u>신문, 방송이나 각종 출판물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5·18 민주화운동을 비방·왜곡하거나 사실을 날</u>	1.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 반대, 왜곡, 또는 비방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한다. 2. 대한민국 헌법의 개정 또는 폐지를 주장, 발의, 제안 또는 청원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한다. 3. 유언비어를 <u>날조, 유포하는 일체의 행위</u>

<u>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u> ② 전항의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를 금한다. 4. 위의 1, 2, 3호에서 금한 행위를 <u>권유, 선동, 선전하거나 방송, 보도, 출판, 기타의 방법으로 이를 타인에게 알리는 일체의 언동을 금한다.</u> 5. 이 조치에 위반하는 자와 이 조치를 비방하는 자는 법관의 영장 없이 체포, 구속, 압수, 수색하며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6. 이 조치에 위반한 자와 <u>이 조치를 비방하는 자는 비상군법 회의에서 심판, 처단한다.</u>
---	---

둘째, 5.18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 기념곡으로 지정하고 △ 5.18기념식에서 제창토록하며 △ 정부가 5.18 기념행사를 5.18 유공자, 가족 및 유족 등과 협의하여 개최하라고 규정한 것은 대한민국 헌법정신에 반(反)하는 조치이므로 결코 수용할 수 없다.

이는 ‘임을 위한 행진곡’의 실체를 파악하면 확인될 것이다.

① 「임을 위한 행진곡」은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인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구현하기 위해 투쟁한 민주화운동가를 기리는 노래가 아니다. 이 노래는 이른바 광주항쟁에서 끝까지 투쟁한 윤상원의 무장투쟁정신을 기리기 위해 만들어진 노래이고, 넓게는 이른바 그들이 지향하는 혁명을 위해 윤상원과 같이 최후까지 무장투쟁하다 사망한 소수의 혁명가들을 기리는 노래이다.

이러한 노래를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기념곡으로 지정하자는 것은 진정한 ‘광주민주화운동 정신’을 훼손하고 광주민주화운동 희생자들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광주민주화운동 정신이란 당시 군부독재에 항거하여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려는 정신이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체제를 부정하고 사회주의혁명을 지향하는 운동이 결코 아니다.

② 「임을 위한 행진곡」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이른바 운동권세력(지하혁명세력 포함)들에 의해 애국가를 대신하여 불리워지는 대표적 운동권 가요이다.

실제 운동권세력들은 각종 행사나 비밀회합시 국민의례를 거부하고 이른바 민중의례를 진행하며, 국기에 대한 경례나 애국가 제창 대신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고 있다. 이는 그동안 적발된 간첩사건 등 국가보안법 사건 및 이석기 내란선동사건이나 위헌정당으로 해산된 통진당사건 등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임을 위한 행진곡」이 자유민주주의를 수호, 구현하려는 가요라면, 결코 혁명세력들에 의해 불리워질 수 없는 것이다.

③ 「임을 위한 행진곡」은 북한에 의해 남조선혁명을 선동하는 이른바 혁명가요로 활용되고 있다. 북한은 ‘광주민주화운동’을 “남한(적화)혁명을 위한 인민봉기” 또는 “남조선 인민들의 반파쇼민주화 투쟁사에 빛나는 장을 기록한 역사적 사변”으로 규정하고 매년 기념행사를 성대히 치루고 있다. 또한 5.18 관련자들을 ‘애국열사능’에 가묘를 세워 안장했다는 증언도 있다.

특히, 1990년대 검거된 복수의 남파간첩(전향)들에 의하면, 북한에서 공작교육시 5.18이 실패로 돌아간 원인에 대해 연구하고 더불어 남조선혁명가요인 「임을 위한 행진곡」의 성향에 대해 교육받은바 있다고 증언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1991년 5.18을 소재로 한 「임을 위한 교향시」라는 영화를 제작했는데 시나리오를 당시 불법 방북한 황석영과 리춘구(북한작가)가 공동 집필하고 음악은 재독 친북음악가 윤이상과 리종오(북한 음악가)가 담당하였다. 동 영화에 「임을 위한 행진곡」이 두 차례에 걸쳐 배경음악으로 삽입되어 있다.

국내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작사하고 제작을 주도했던 황석영이 불법 방북하여 5.18 관련 혁명영화제작에 참여하고, 이 영화에 「임을 위한 행진곡」을 배경 음악으로 삽입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닌 것이다.

북한이 발간한 혁명가요집 <통일노래 100곡 모음집>(윤이상음악연구소, 1990)에 국내 운동권 가요가 24곡이 수록되어 있는데, 「임을 위한 행진곡」도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제반 정황은 「임을 위한 행진곡」이 북한에 의해 남한혁명을 선동하는 혁명가요의 반열에 있음을 명백히 보여준다.

셋째, 5.18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른바 광주민주화운동 정신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훼손하는 것이다.

광주민주화운동의 정신이 진정으로 당시 군부독재에 항거하여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려는 정신이라면, 앞서 지적했지만 5.18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원리를 근본적으로 부정하고 훼손하는 것이기에 수용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행정절차적 측면에서도 5.18 기념행사를 5.18 유공자, 가족 및 유족 등과 협의하여 개최하라고 규정한 조항은 아예 정부의 존재하는 법적 기반을 무시하는 초법적 발상이다.

따라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5.18 기념곡으로 지정하자는 주장이나, 5.18 기념식에서 제창하자는 법률개정안 발의는 대한민국 헌법체계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훼손하는 행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을 수호하고 입법 활동을 통해 헌법적 가치를 구현해야 할 국회의원들이

나서서 헌법정신을 훼손하고 부정하는 법률개정안을 발의한 것은 안보 및 국가정체성에 반하는 행위이며 스스로 헌법적 가치의 파괴자임을 자인하는 것이다.

Ⅲ. 맺는 말

20대 국회 개원 이후 현재(2016.9.6.)까지 발의된 의안은 2,184건으로 앞으로도 계속 발의될 것이다. 이들 의안 중 국가안보와 국가정체성에 반하는 개정 및 제정 법안을 가리는 작업이 쉽지는 않으나, 오늘 발족된 국회입법감시단이 중심이 되어 법안 모니터링 작업을 지속해야 할 것이다. 이는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을 수호하고 발전시키는 첫 걸음이 될 것이다.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께서는 헌법정신과 질서에 반하는 입법발의를 결코 해서는 안 될 것이며, 이를 범하는 의원들을 기록으로 남겨 유권자들이 다음 선거 때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부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안(정보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기준: 2016.09.06.)

■ 정보위원회(총 2건)
- 국가 사이버안보에 관한안(새누리당 이철우) -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안(더불어민주당 이춘석)
■ 외교통일위원회(총 24건)
- 통일경제자유특별자치시의 설치 및 자유평화경제특별구역의 조성·운영과 지원에 관한 특별안(더불어민주당 박정)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더불어민주당 윤후덕) -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안(더불어민주당 윤후덕) - 여권법 일부개정안(더불어민주당 남인순)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안(국민의당 주승용) -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안(더불어민주당 박경미) - 여권법 일부개정안(국민의당 주승용) -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새누리당 이학재) - 배타적 경제수역법 일부개정안(국민의당 박지원) - 조약의 체결·비준에 관한 민주적 통제를 위한안(더불어민주당 박주민) - 재외국민보호안(새누리당 김정훈) - 한국국제협력단법 일부개정안(국민의당 주승용) - 개성공단 입주기업 등의 피해지원에 관한 특별안(더불어민주당 심재권) - 남북경제협력사업 중단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안(더불어민주당 홍익표) - 금강산 관광사업 중단 또는 5·24조치로 인한 남북경제협력사업자 등 손실 보상에 관한 특별안(더불어민주당 원혜영) - 재외공관용 재산의 취득·관리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국민의당 주승용)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국민의당 윤영일) - 조약의 체결·비준 절차 등에 관한안(더불어민주당 홍익표) -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안(더불어민주당 홍익표)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국민의당 박주선) - 영해 및 접속수역법 일부개정안(새누리당 김도읍) - 여권법 일부개정안(더불어민주당 홍익표) - 한국국제협력단법 일부개정안(국민의당 주승용)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더불어민주당 원혜영)
■ 국방위원회(총 30건)
- 방위사업법 일부개정안(더불어민주당 변재일) - 군사시설 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안(더불어민주당 변재일)

- 군인사법 일부개정안(더불어민주당 안규백)
- 병역법 일부개정안(더불어민주당 안규백)
-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안(더불어민주당 안규백)
- 방위사업법 일부개정안(더불어민주당 안규백)
- 군인연금법 일부개정안(더불어민주당 안규백)
- 군인사법 일부개정안(더불어민주당 안규백)
-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방지 및 보상에 관한안(국민의당 김동철)
- 월남전 참전군인의 전투근무급여금 지급에 관한 특별안(더불어민주당 이연주)
- 군인연금법 일부개정안(새누리당 이종명)
- 방위사업법 일부개정안(국민의당 김중로)
- 6·25전쟁 전후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안(새누리당 김종태)
-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안(더불어민주당 윤후덕)
- 6·25 참전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안(더불어민주당 윤후덕)
- 군인사법 일부개정안(더불어민주당 윤후덕)
- 군인사법 일부개정안(새누리당 이종명)
- 병역법 일부개정안(국민의당 주승용)
- 군인사법 일부개정안(새누리당 김용태)
- 병역법 일부개정안(국민의당 박주현)
- 병역법 일부개정안(새누리당 정진석)
- 방위사업법 일부개정안(새누리당 김학용)
-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국민의당 주승용)
- 병역법 일부개정안(더불어민주당 문미옥)
-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국민의당 김중로)
- 제2연평해전 전투수행자에 대한 명예선양 및 보상에 관한 특별안(새누리당 심재철)
- 국군의 해외파견활동에 관한안(새누리당 김영우)
-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더불어민주당 안규백)
- 군인연금법 중 사병복무기간 가산에서 제외된 퇴직군인의 연금 지급에 관한 특별안(더불어민주당 안규백)
- 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새누리당 박완수)

[토론 ③]

제20대 국회 주요 반시장법안 발의 현황과 개선과제

김 영 훈
바른사회시민회의 경제실장

1. 서론

국회를 통과하는 법률안은 정부가 발의하는 정부제출 법률안과 국회가 제출하는 의원발의 법률안으로 구분된다. 과거 정부가 제출한 법안을 통과시켜준다는 의회의 ‘통법부’와는 달리 최근 국회가 왕성한 입법활동을 벌이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라고도 할 수 있다. 문제는 의원입법발의가 폭증하면서 오히려 남발되는 법안들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은 국민들의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점점 복잡하고 급변하고 있는 사회변화 속에서 법률안의 파장과 영향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와 점검이 필요하다.

특히 의원입법은 행정입법과 달리 법안발의 및 심의절차가 비교적 간소화되어 있다. 이에따라 행정부 역시 청부입법이라는 비판속에서도 의원입법을 통해 법안을 발의하는 추세다. 의원입법은 민원 해결이나, 이해관계자들의 이해관계를 반영한 전략적 법안발의, 양적평가를 위한 중복, 표절 법안이 발의된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정부입법의 경우 부처, 당정협의 등 다양한 이해관계부처간의 조율과 오랜 논의 과정을 거쳐 결정되는 반면, 국회입법의 경우 법안의 제정과정이 정부안에 비해 간소하고, 법안이 미치는 영향이나 비용 등에 대해 검토가 미흡하다.

반시장법안은 공공부분의 확장을 통해 민간부분과 경합하면서 경제활동을 제약하고, 소비자 후생을 저해하는 문제를 가져오게 된다. 또한, 시장에서 결정되어야 할 고용, 가격 등을 법으로 강제화함으로써 당초의 의도와는 달리 경제를 위축시키는 부작용을 발생시키게 된다. 이에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주요 반시장법안 현황을 살펴보고 반시장법안의 입법발의 및 심사과정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해본다.

2. 주요 반시장법안 현황

① 사회적 경제 관련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등 사회적경제조직을 포괄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고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한 정책의 수립, 총괄, 조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공동체기반 확충과 시·도지역의 사회적경제 발전역량 강화를 위하여 정책, 예산, 조달, 금융, 세제, 기금 등의 지역발전 시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추진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총구매액의 5%까지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이 생산하는 재화와 용역을 구매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민간기금 조성을 목표로 기업의 기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조사 당시 전국 8000여개 조합 가운데 제대로 운용되는 것은 10%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이 법의 시행으로 공공기관 구매액 가운데 1조8000억원이 사회적 경제조직에 배정될 전망이라고 한다.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정부지원을 입법화함으로써 정부지원에 의존하는 좀비기업을 양산할 것으로 우려된다. 또한 기금신설과 의무 구매에 따른 다른 기업들과의 불공정 경쟁을 야기하는 부작용이 우려된다.

【표 1】 사회적 경제 관련 주요법안

상임위	법안	주요내용
기재위	사회적경제기본법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환노위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	사회적경제기업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공공기관의 구매지침 수립
기재위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조달, 개발, 위탁, 기타 민간지원 사업에 있어, 사회적 가치를 고려하고,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공공기관 평가에 반영토록 함.
기재위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	「사회적경제기본법」에 따른 기금의 설치근거로 국가재정법 개정

② 청년고용할당제

2016년 3월 청년실업률은 11.8%로 전체 실업률 4.3%의 2배 이상이다. 이처럼 청년실업 문제가 화두로 떠오르자, 정치권에서는 입법을 통해 청년고용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하고 있다. 비슷한 내용의 법안들이 20대 국회에서만 5차례 발의되었다.

현재 공공기관으로 한정되어 있는 청년의무 고용을 일정규모 이상의 민간기업에게까지 확대하는 내용들이다. 그러나, 고용이나 성장, 물가 등은 시장의 영역으로 정부의 법제화를 통해 이루어질 수는 없다. 고용은 기업의 사업전망, 경영환경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청년실업과 같은 고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제성장을 통해 시장에서 지속적인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다.

【표 2】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발의 현황

제안일	주요내용
8.10	일정규모 이상인 기업에도 청년고용할당제를 적용
6.14	근로자 수 300명 이상의 민간기업에게도 3% 이상의 고용의무를 적용, 미이행시 고용부담금 부과
6.7	근로자 수 300명 이상 민간기업에게도 청년미취업자 고용 의무 비율 5% 적용, 미이행시 고용부담금을 부과
5.30	상시근로자수가 일정규모 이상인 기업에도 청년고용할당제를 적용
5.30	일정규모 이상의 민간기업은 상시근로자 수의 3% 이상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 부과, 미이행시 고용부담금 부과

③ 대형마트 영업규제

유통산업발전법은 제1조(목적)은 “유통산업의 효율적인 진흥과 균형 있는 발전을 꾀하고,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세움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을 규정하고 있지만, 국회에 발의된 유통산업발전법은 ‘소비자 보호’에 역행하고, 오히려 특정 공급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있다.

전통시장에 대한 정부 지원만으로는 골목상권을 살리는 것은 한계가 있다. 전통시장에 대한 소비자의 외면은, 구조적-시대적 변화에 따른 것이다.. 즉, 골목상권은 ‘골목’이 있어야 형성된다. 주거형태의 변화(단독주택에서 공동주택), 가구구성의 변화(1인 가구 증가), 근로형태의 변화(외벌이에서 맞벌이)에 맞는 소비는 전통시장이 아닌 대형마트에 적합한 소비행태이다. 고급 서비스를 지향하며, 쇼펩부터 문화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선호하는 소비자들의 기호가 반영된 것이다. 대형마트를 규제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경쟁 촉진을 통해 소비자 후생을 극대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표 3】 대형마트 영업규제 관련 주요법안

상임위	법안	주요내용
산자위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점포등의 개설시 일정 범위 이내의 자치단체장과의 등록 합의를 의무화.

3. 경제관련 위헌 및 헌법불합치 법안¹⁰⁾

정부입법보다 절차가 간소하다고 하지만, 국회 역시 입법지원조직과 의원보좌진, 상임위 및 법사위 심사를 거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를 통과한 법안이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지고 있다. 2004년부터 2013년 8월 31일 사이 전체 위헌법률-조항은 총 173개이다. 이중 광의의 '경제'관련 위헌법률-조항은 모두 124개이다. 경제관련 법률-조항의 위헌비율은 71.7%이며, 전체 124개의 위헌법률-조항 중 26개가 의원발의(21%) 법이다. 의원발의안은 정부발의안(11.7년)보다 훨씬 짧은 기간(6.3년)에 위헌결정이 내려졌다. 의원입법이 정부입법보다 위헌이나 헌법불합치 판결로 생명력을 잃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절반가량에 불과하다. 그만큼 의원입법이 정부입법보다 부실하다는 의미다.

【표 4】 위헌 관련 정부발의 vs 의원발의

	정부발의	의원발의
평균시간	약 11.7년	약 6.3년
최단시간	22개월 ¹¹⁾	13일 ¹²⁾
최장시간	49년 7개월 ¹³⁾	28년 7개월 ¹⁴⁾

4. 반시장법을 막기 위한 방안

① 규제심사장치 필요¹⁵⁾

제19대 국회에 제출된 규제 신설강화 법률안 중 95%가 의원발의안이며, 가결된 규제 신설강화안 또한 대다수(93%)가 의원발의 법률안이다. 또한, 의원발의 규제 신설강화안 538건 중 345건(64%)이 주요규제로 정부 입법에서는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받아야 하는 것을 나타냈다. 입법이 미치는 파장을 고려해, 불합리한 규제를 남발하는 반시장 법안에 대해서는 전문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규제심사장치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② 의원들의 입법에 대한 사후 평가 강화

10) 헌법불합치-위헌 판결을 통해 본 국회 입법 책무성 강화방안, (김영훈/이수영), 2013.11

11) 지방세법 제7013호

12) (한)대통령후보 이명박 주가조작 등 범죄혐의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8824호

13) 회사정리법 제1214호

14)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814호

15) 제19대 국회 의원입법 평가와 발전 방향 모색, (전경련)

시민단체들의 의원평가가 아직까지도 법안발의 중심이고, 모니터링 단체와 의원이 국정감사 우수 의원등을 언론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중복, 체계/자구 수정 등 실 적용 법안을 평가시 제외하고, 친시장경제등 정량적 평가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17대 국회의 경우‘법률안의 체계·형식과 자구의 심사에 관한 사항’을 다루는 법사위의 경우에도 33명중 10명(33%)이 위헌·헌법불합치 법안을 발의했다. 정당 공천심사시 위헌·헌법불합치 발의 의원에 대한 패널티 부여 등을 통해 법안제정시 보다 체계적인 검토와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③ 국회, 정보공개 확대해야¹⁶⁾

법안제출까지의 모든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될 필요가 있다. 국회는 국회의원의 법률안 입안 의뢰와 회답 사항, 국회의원이 조사분석 요구한 사항 및 그 회답 자료, 국회의원이 요구하는 사항의 조사분석 및 의안 소요 비용의 추계를 모두 비공개 대상 정보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원칙적 공개, 예외적 비공개를 기본으로 하는 현행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는 부득이한 비공개 정보의 경우 각 기관이 세부 규정을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국회는 지나치게 엄격하게 이를 적용하고 있다.

입법조사기관이 생산한 자료는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자료다.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자료를 굳이 국민에게 공개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 이를 공개할 경우 시민단체들의 입법과정 모니터링도 강화될 뿐만 아니라, 입법과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④ 입법예고, 실효성 제고해야¹⁷⁾

정부와 입법부 법안 논의 과정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입법예고 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그러나, 입법 예고의 목적은 입법과정에서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단순히 절차적인 정당성을 부여받기 위해 입법예고시스템을 운영한다면, 이는 예산낭비다.

국회 검토보고에서는 타 기관의 입장을 인용하고 있다. 그러나 입법예고 시스템을 통해서는 각 기관의 입장 파악이 불가능하다.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지만, 협회와 같은 민간단체 등의 경우에는 이조차도 불가능하다. 국회 정부위원회의 경우 2012.8.2~2013.7.1사이에 의견이 제출된 입법예고 법안은 총 24개이다. 제출자별로 보면 기관은 10개, 개인은 14개 법안에 대해 의견을 제출했다. 하지만 기관이 제출한 의견은 모두 공문으로 제출되어 국회입법예고시스템을 통해서는 확인할 수 없다. 국회입법예고시스템 구축을 위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지만 대부분은 공문으로 의견이 제출되고 있어 반쪽짜리 시스템으로 전락하고 있다. 법안심사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

16) (문화) 국회의원에게 제공되는 공공정보를 국민에게도 공개해야. (김영훈), 2014.5.14

17) (미공개 보고서)국회 입법과정의 국민참여 확대 방안, (김영훈/이수영), 2014.4

한 의견들에 대해서는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표 5】 행정부(국민참여입법시스템) vs 입법부(국회입법예고시스템)

	 국민참여입법시스템	 국회입법예고
구축시기	2008년	2012년
구축비용	7억7739만7천원	1억6450만원
연간 운용예산	8551만4천원	3027만5천원

[토론 ④]

20대 국회, 어쩌려고 아무 생각 없이 법 만드나!

조 형 곤
21세기미래교육연합 대표

1. 우리나라 법령 현황

2016년 9월 현재, 우리나라는 1,557건의 법률을 보유하고 시행중이다. 형법이나 민법과 같은 법무부 소관 법률이 158건으로 가장 많고, 국토교통부 131건, 보건복지부 110건, 행정자치부 86건, 산업통상자원부 84건, 해양수산부 78건, 교육부 76건, 기획재정부 76건, 농림축산식품부 72건, 문화체육관광부 68건, 미래창조과학부가 68건의 순으로 법률을 소관하고 있다.

대통령령과 총리령(일부 규칙)까지 법령의 범위를 확대하면 총 4,812건에 이르고, 부처의 규칙 14,153건을 포함하면 1만 9천여 건의 법령규칙을 보유하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는 총 97,166건에 이른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홈페이지에서 자치법규를 클릭하면 97,166건을 모두 볼 수 있는데, 이 중 첫 번째 자치법규는 경상남도 산청군의 '2013 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 서비스 개선 및 환경정비 지원 조례'이다. 이 조례 제3조는 다음과 같다.

제3조(지원대상) ① 군수는 엑스포 개최에 따른 시설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1. 숙박시설 및 민박시설 신·증축 및 시설 개선사업(화장실 개선, 침실 도배, 침구류 교체 등)
 2. 식품위생시설 음식개발사업, 신·증축 및 주방시설 개선사업(조리기구, 식기, 수저, 식탁, 방석 등)
 3. 빈집(부속사 포함) 정비사업
 4.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주택신축, 슬레이트 지붕 교체사업 등)
 5. 한방도시 환경디자인 사업(벽화 그리기 등)
 6. 옥외광고물 정비사업
 7. 엑스포 상징물 사용 지원사업
 8. 그 밖에 엑스포 관람객 서비스 향상, 환경미화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 사업자금의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또 다른 자치법규는 전남 순천시의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이다. 이 조례 제6조는 다음과 같다.

제6조(출연금 등의 지원) 시장은 조직위원회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입법기관인 국회가 법을 만들거나 개정하면 그 새로운 법 및 법조항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수반되는 경우가 많다. 비용추계서는 이럴 경우에 작성된다. 몇 가지 사례를 들면 이렇다.

2. 법률안 개정에 따른 비용추계 사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국민들이 납부하는 보험료와 국가 재정 지원 금액을 합하면 연간 64조원에 이른다. 여기에는 의료법이나 의료급여법 등도 동원된다.

이번 20대 국회 개원 이후에 올라온 의안들 중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이 18건에 이른다. 그 중 윤소하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16세 미만의 입원진료비 면제에 관한 것인데,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연평균 1,143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만약 이 법안이 개정되면 면제되는 금액만큼 누군가 비용을 더 내거나 국가가 지원해야만 한다.

유승희 의원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라 비용을 추계해보니 연평균 729억원의 추가 재정이 소요된다. 이 돈으로 청력이 좋지 않은 65세 이상의 주민에게 보청기를 사주기 때문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도 6건이 올라와 있는데 그 중 하나의 비용추계서를 살펴보니 연간 1조원의 국가 재정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현재는 65세 이상의 기초노령 연금 대상자가 동시에 기초생활수급대상자일 경우 최저생계비에서 연금소득을 제외한 나머지를 지급하고 있다. 즉 동시 지급이 불가능하다. 그런데 20대 국회에 제출된 이 법률개정안이 가결되면 기초연금과 기초생활보장 둘 다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연간 1조원의 재원이 추가된다.

병역법을 개정하여 전역자 전원에게 군 복무기간동안 받은 사병의 월급만큼 전역지원금을 주게 되면 연간 1조 2천억 원이 필요하다.

만약 이러한 법률안이 원안대로 가결된다면 세금을 더 걷거나 다른 데서 줄여야만 한다. 경기가 상승할 때는 매년 증대되는 세수를 가지고 추가 재원을 마련할 수 있지만 지금처럼 저성장 시대에는 세금이 늘어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3.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아무 생각 없는 개정안의 대표적 사례

한편 우리나라는 매년 50조원에 이르는 엄청난 재정을 초·중등교육법을 실현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다. 그 중 40조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서 내국세 총액의 20.27%를 교부율로 정했기 때문에 그 재원이 마련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무려 19건이나 올라와 있는데 그 중 11건의 내용이 동일하다. 즉 내국세 총액의 20.27%를 지방교육의 재정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이를 적게는 1% 상향조정하는 안에서 많게는 5% 상향 조정하는 안까지 중복되고 있다.

2015년 현재 내국세 총액이 200조원이고 이의 20.27%는 40조원에 이른다. 이러한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계산해 보면 교부율을 1% 올릴 때마다 2조원이 교육비로 추가되어야 한다. 만약 5% 상향 조정할 경우 10조원 추가된다.

추가로 세금을 더 걷는 것이 아닌 내국세 총액의 1~5% 비중 증가의 문제는 다른 부처 예산을 줄이지 않고서는 산술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지난 2004년에 19.4%였던 이 비율은 2006년에 20%로 조정되었고, 2010년에는 20.27%로 개정되는 등 소폭의 비율 증가가 있어 왔다.

20대 국회는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채 컨닝법안, 그것도 오답 컨닝 법안을 앞다퉈 제출하고 있다. 다음의 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안 중에서 교부비중의 변경에 관한 11건의 의안에 관한 정보를 모은 표이다.

발의일	발의대표	발의의원	주요내용1	주요내용2
2016-06-02	설훈	조정식, 안민석, 정세균, 문희상, 정춘숙, 윤종오, 전혜숙, 심재권, 이원욱	20.27%에서 25%로 상향	보통교부금 96%에서 97%로, 특별교부금은 4%에서 3%로
2016-06-02	김태년	박주선, 박광운, 이찬열, 김병관, 조정식, 박경미, 남인순, 정세균, 백재현, 조승래, 임종성, 김경수, 안규백, 설훈	20.27%를 25%로 상향	보통교부금 96%에서 98%로, 특별교부금은 4%에서 2%로
2016-06-03	오제세	이찬열, 양승조, 유성엽, 박정, 윤호중, 위성곤, 윤관석, 박광운, 박범계	20.27%에서 21.27%로 상향	어린이집을 초·중등 교육법에 따른 준 교육기관으로 지정
2016-06-03	최도자	주승용, 박지원, 이용주, 김종희, 김삼화, 김광수, 김동철, 김관영, 박주선, 유성엽, 신용현, 권은희, 정인화, 윤영일, 박준영, 황주홍, 홍영표, 김중로, 조배숙, 이개호, 손금주, 이동섭, 김수민	20.27%에서 22.27%로 상향	어린이집을 교육기관에 포함
2016-06-03	주승용	박주선, 이찬열, 박준영, 김부겸, 김정우, 이개호, 조정식, 김동철, 김경진, 이용주, 손금주	20.27%에서 25.27%로 상향	
2016-06-08	권칠승	김병관, 이찬열, 안규백, 김해영, 박주선, 황희, 신경민, 신동근, 손혜원	20.27%에서 22.27%로 상향	
2016-06-15	윤소하	손혜원, 심상정, 추혜선, 노회찬,	20.27%에서	보통교부금 96%에서

		이정미,김종대,박주선,양승조,황주홍,유성엽,정동영	21.27%로 상향	97%로, 특별교부금은 4%에서 3%로
2016-06-23	박홍근	이찬열,위성곤,김해영,박주선,이인영,김경수,이용득,권미혁,이재정	20.27%에서 22%로 상향	보통교부금 96%에서 98%로, 특별교부금은 4%에서 2%로
2016-06-24	유은혜	백혜련,윤후덕,신창현,도종환,인재근,정성호,손혜원,심상정,홍의락,김병욱,신경민,김영진,전재수,신동근,송영길,김민기,우원식	20.27%에서 22.27%로 상향	보통교부금 96%에서 98%로, 특별교부금은 4%에서 2%로
2016-07-08	송기헌	여기구,박정,이훈,유동수,김병욱,최인호,박찬대,박재호,박범계	20.27%에서 (22.27~25.27)% 사이에서 조정	
2016-07-08	김민기	손혜원,윤후덕,백혜련,김태년,김현권,박남춘,서형수,민병두,박주민,전해철,김해영	20.27%에서 23.27%로 상향	

위 표를 자세히 보면 대표발의와 공동발의에 참여한 의원들이 서로 품앗이한 정황이 분명해 보인다. 설훈 의원은 본인이 대표발의자가 된 의안이 있는가 하면 김태년 의원의 의안에도 서명을 했다. 주승용 의원은 최도자 의원의 발의안에 서명했고, 김민기 의원은 유은혜 의원의 발의안에 서명했다. 김태년 의원도 본인이 대표발의를 해 놓고 한 달 후에 김민기 의원의 발의안에 또 서명했다.

이찬열 의원이나 박주선 의원은 대동소이한 이 법률안에 다섯 번이나 서명했다.

4.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시 검토할 중요사항들

적정한 지방교육재정교부율에 대해 계산하려면 국세증가율과 학생 수의 변화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유치원 및 초중고 학생 수 변화

년도	전체(A)	유치원(B)	초중고합계(C)	초등학교(D)	중학교(E)	고등학교(F)	기타(G)
비교	A=B+C		C=D+E+F+G				
1970	7,793,585	22,271	7,771,314	5,749,301	1,318,808	590,382	112,823
1980	10,044,891	66,433	9,978,458	5,658,002	2,471,997	1,696,792	151,667
1990	9,965,954	414,532	9,551,422	4,868,520	2,275,751	2,283,806	123,345
2000	8,549,865	545,263	8,004,602	4,019,991	1,860,539	2,071,468	52,604
2005	8,384,506	541,603	7,842,903	4,022,801	2,010,704	1,762,896	46,502
2006	8,368,339	545,812	7,822,527	3,925,043	2,075,311	1,775,857	46,316
2007	8,324,217	541,550	7,782,667	3,829,998	2,063,159	1,841,374	48,136
2008	8,202,037	537,822	7,664,215	3,672,207	2,038,611	1,906,978	46,419

2009	8,031,964	537,361	7,494,603	3,474,395	2,006,972	1,965,792	47,444
2010	7,822,882	538,587	7,284,295	3,299,094	1,974,798	1,962,356	48,047
2011	7,601,338	564,834	7,036,504	3,132,477	1,910,572	1,943,798	49,657
2012	7,384,788	613,749	6,771,039	2,951,995	1,849,094	1,920,087	49,863
2013	7,187,384	658,188	6,529,196	2,784,000	1,804,189	1,893,303	47,704
2014	6,986,116	652,546	6,333,570	2,728,509	1,717,911	1,839,372	47,778
2015	6,819,927	682,553	6,137,374	2,714,610	1,585,951	1,788,266	48,547

1980년에 1천만에 이르던 초중고 학생 수는 서서히 줄어들기 시작해서 1990년에는 955만, 2000년에는 800만으로 감소한다. 다시 2005년에는 780만으로 줄고 2010년에는 728만, 2015년에는 613만 명으로 줄어든다.

반면 지방교육재정의 증가폭은 눈에 띄게 늘어난다.

지방교육재정 연도별 증감 현황

연도	세입결산액 (조원)	중앙정부이 전수입	지방자치단 체인전수입	기타이 전수입	자체수 입	지방교 육채	기타
2004년	33.14	21.69	6.35	0.05	1.14	0.59	3.34
2005년	34.48	23.86	5.98	0.03	1.21	1.82	1.59
2006년	34.74	24.82	6.46	0.05	1.30	0.35	1.77
2007년	38.70	27.24	7.20	0.07	1.91	0.53	1.74
2008년	45.49	33.23	7.98	0.05	1.61	0.27	2.36
2009년	48.13	30.97	7.65	0.17	1.70	2.14	5.50
2010년	48.48	32.57	7.83	0.08	1.51	1.04	5.45
2011년	51.70	34.28	8.34	0.11	4.00	0.00	4.97
2012년	54.93	39.40	9.06	0.10	1.51	0.03	4.83
2013년	57.26	41.07	9.17	0.08	1.56	0.96	4.42
2014년	60.52	40.98	10.21	0.08	1.49	3.80	3.96

위 두 개의 표를 조합하여 학생 1 인당 공교육비를 계산해보면 다음과 같다.

학생1인당 연간 공교육비

년도	전체(유치원 +초중고 학생수)	유치원생수	초중고 학생수 합계	지방교육재정 (조원)	초중고 1인당 공교육비 (연간)	유초중고 1인당공교육 비(연간)
1970	7,793,585	22,271	7,771,314			
1980	10,044,891	66,433	9,978,458			
1990	9,965,954	414,532	9,551,422			
2000	8,549,865	545,263	8,004,602			

2005	8,384,506	541,603	7,842,903	34.48	4,396,261	4,112,281
2006	8,368,339	545,812	7,822,527	34.74	4,441,181	4,151,512
2007	8,324,217	541,550	7,782,667	38.70	4,972,585	4,649,082
2008	8,202,037	537,822	7,664,215	45.49	5,935,864	5,546,639
2009	8,031,964	537,361	7,494,603	48.13	6,421,868	5,992,227
2010	7,822,882	538,587	7,284,295	48.48	6,655,769	6,197,535
2011	7,601,338	564,834	7,036,504	51.70	7,347,824	6,801,828
2012	7,384,788	613,749	6,771,039	54.93	8,113,098	7,438,819
2013	7,187,384	658,188	6,529,196	57.26	8,769,472	7,966,403
2014	6,986,116	652,546	6,333,570	60.52	9,554,868	8,662,385
	2005년 대비 증감률		19.2% 감소	75.5% 증가	117.3% 증가	110.6% 증가

초중고 1인당 공교육비와 유치중고 1인당 공교육비로 구분해 놓은 이유는 통계의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지방교육재정의 대부분이 초중고등학교에 지원되기 때문에 유치원 원아수를 포함해서 계산하면 초중고등학교에 지원하는 예산이 줄어들어 보인다. 그렇게 잘못 계산하면 학생1인당 공교육비가 지나치게 높다는 것을 알게 되고 이에 대한 부담을 피하려고 유치원생수를 더하여 계산하기 시작한 것이다. 물론 이러한 학생1인당 공교육비 계산은 2011년부터 발표되기 시작했다.

2005년도의 학생수와 교육재정 그리고 학생1인당 공교육비 등의 자료와 10년이 지난 2014년의 비교자료는 가히 충격적이다. 학생 수는 무려 19.2%가 감소했는데 교육예산은 75.5% 늘어났고, 이를 학생 1인당 공교육비로 계산해보니 두 배 이상이 되었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진즉부터 학생1인당 교육비로 환산하여 교육예산을 확보하거나 지출했어야 한다. 이는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나 가장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다. 교육예산, 복지예산 등은 공급자가 아닌 수혜자 중심의 예산이 되어야 하며 수혜자의 인원수만큼 확보되어야 교육과 복지를 공평하게 실현할 수 있다. 그런데 교육 분야에서는 오랜 세월 동안 수요자인 학생 중심이 아닌 공급자인 교사와 교육청을 중심으로 예산이 세워지고 운영되었다. 만약 지난 2010년의 학생 수를 기반으로 교육재정을 편성하고 운영했다면 2015년에는 약 10조원이 넘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을 것이고 이 비용은 누리과정은 물론 기타 복지비용으로 상당한 부분 전출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국회와 교육부는 이러한 사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지금도 논란이 되고 있고 이 때문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고치려고 하는데 과연 교부율을 고치면 되는지 또 다른 해법은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

누리과정 논란의 발단이 된 해는 2011년이다. 야권에서 무상급식을 주장하여 2010년의 지방선거에서 득표에 성공하자 여권에서는 무상보육을 제시했다. 당시 이명박 정부는 어린이집 과정을 누리 과정에 포함하면서 정부예산과 교육청 예산을 반반씩 사용하다가 줄어드는 학생 수와 늘어나는 교육 재정을 감안하면서 2015년부터는 누리과정 예산 전액을 지방교육 예산으로 충당하기로 교육감들과 합의한 바 있다.

그런데 대통령이 바뀌고 지방의 교육감들도 바뀌면서 이러한 합의는 잊혀지고 말았다. 정부가 합

의 내용을 상기시켜도 교육감들은 자신이 한 일이 아니라고 강변하고 있다.

당시의 교육부 역시 질책을 피할 수 없다. 법령을 개정하여 이러한 과정을 법조문에 명기해 놓았다면 이런 혼란을 야기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여당의 일부 의원들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누리과정 예산을 지방교육재정에서 지출하도록 제도를 개선중이다. 매우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반드시 해야 한다.

5.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의 문제점

교육분야에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일부개정 이외에도 여러 쟁점 법안들이 있다. 대표적으로 초·중등교육법을 들 수 있는데 이 법안의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내용은 다음의 표와 같다.

대표발의	의원 수	제안일자	주요내용
김영호	13	2016-09-05	학교냉난방요금감면
주승용	10	2016-09-02	학업중단숙려제를시행령에서법률로상향
안민석	17	2016-08-24	학교운영위원회에행정직원포함
김명연	10	2016-08-08	난독증학생등의조기발견및치료
송기석	12	2016-08-03	학교행정실설치에대한법령근거마련
유은혜	27	2016-07-28	학교행정실설치에대한법령근거마련
김상희	10	2016-07-28	교육과정및교과서심의강화
박홍근	10	2016-07-27	교육과정및교과서변환시국회동의
박경미	17	2016-07-19	교과서운영의법령근거바련
이연주	10	2016-07-08	취학대상아동의미취학에대해적극개입
심상정	11	2016-06-23	교과서국정체제등주요전환시국회동의
박홍근	10	2016-06-21	고등학교의무및무상교육실현
이찬열	33	2016-06-17	역사교과서국정도서사용금지
안민석	18	2016-06-16	셋째이후자녀의교육비지원
김태년	15	2016-06-02	고등학교의무및무상교육실현
박순자	12	2016-06-01	아동학대근절위해장기결석학생관리
이찬열	10	2016-05-30	셋째이후자녀의교육비지원

고등학교 과정을 의무 및 무상교육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연간 2조원 재정이 필요하다.

셋째 이후 자녀의 교육비 지원, 학교 냉난방 요금 감면 등도 실제로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 이 법률개정안 역시 동일 내용이 중복되고 있다.

6. 컨닝 법안을 제출하는 이유

이렇게 동일한 내용의 법률개정안을 여러 의원들이 약간만 바꿔서 올리는 이유는 반드시 원안 혹은 수정가결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지난 19대 국회의 법률안 통계는 다음과 같다.

접수 총계 17,822건 중에 원안 가결은 10%인 1,775건이었으며 수정 가결은 1,018건인데 대안반영은 무려 4,636건이나 되었다. 이 대안반영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같이 동일한 내용으로 11건의 개정안이 올라왔을 때 상임위원에서 대표적으로 한 건만 올리고 나머지는 의 법률안의 내용을 협의 절충하여 대표적 안에 반영하는 식이다.

그러니까 수치만을 약간 바꾼 채로 중복해서 법률개정안을 올리는 것은 절차상 낭비라 할 수 있다. 한 건의 개정안만 올려놓고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면서 내용을 보강하면 그만인데 말이다.

7. 국회의 특권은 바로 이것!

정부가 법률을 만들거나 개정할 때는 그에 따른 비용을 어떻게 충당할지 계산하여 제출한다. 세수를 늘리거나 기존 법령을 폐지하거나 불필요한 예산을 줄여서 새로운 법을 적용한다는 말이다. 그런데 의원들은 이러한 비용 문제에서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고 법안을 제출한다. 국회의 가장 큰 특권은 바로 이것이다. 향간에 국회 특권을 말할 때 국회의원이 받는 세비나 보좌관의 숫자 그리고 각종 특혜를 거론하곤 하는데 국회의 특권 중에서 가장 압도적인 것은 바로 입법 권한이고 정부와 달리 비용을 어디서 충당할지 계산하지 않는 막가파식 입법안 제출 행태이다.

시민단체 주도로 국회입법감시단이 출발하는 이 즈음에 이러한 관행을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

참고자료 #1 <상임위원회별 전부 또는 일부개정법률안 의안수 최다 법률안 상위권>

(20대 국회 개원 이후 2016년 9월 5일까지, 상임위원회는 가나다 순)

교육문화관광체육	198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연간 2조원~10조원 교육으로 비중 확대)	19
초·중등교육법 (고등학교 의무 무상화로 연간 2조원 추가)	16
고등교육법	14
국민체육진흥법	8
학교보건법	7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7
사립학교법	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6
교육공무원법	5
문화재보호법	5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	5
유아교육법	4
학교급식법	4
교육기본법	4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4
국방	36
병역법 (전역지원금 연간 1조 2천억)	6
방위사업법	6
군인사법	6
군인연금법	2
군무원인사법	2
국토교통	137
자동차관리법	9
도로법	7
수도권정비계획법	6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6
공동주택관리법	6
공공주택특별법	5
주택법	5
건설산업기본법	5
공공기관지방이전에따른혁신도시건설및지원에관한특별법	4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4
공인중개사법	4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	4
국회운영	58
국회법	23

국회의원수당등에관한법률	8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7
인사청문회법	4
기획재정	255
조세특례제한법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기한 연장으로 연간 2조2300억 세수 감소)	63
국가재정법	33
소득세법	22
부가가치세법	16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15
상속세및증여세법	14
법인세법 (과세표준 200억 초과 기업의 법인세를 22%에서 25%로 인상)	13
국세기본법	12
국유재산특례제한법	6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5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122
동물보호법	9
한국마사회법	4
친환경농어업육성및유기식품등의관리·지원에관한법률	4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4
농어업재해보험법	4
농지법	4
해양환경관리법	3
농어업재해대책법	3
자유무역협정체결에따른농어업인등의지원에관한특별법	3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	3
가축전염병예방법	3
4·16세월호참사진상규명및안전사회건설등을위한특별법	3
수산자원관리법	3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3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	7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10
원자력안전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7
전기통신사업법	6
방송법	6
원자력안전법	5
이동통신단말장치유통구조개선에관한법률	4
과학기술기본법	3
방송통신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3
법제사법	179
형법	13

주택임대차보호법	1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10
상법	8
변호사법	8
민법	7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6
형사소송법	5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	5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	5
검찰청법	5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4
변호사시험법	4
보건복지	200
국민건강보험법 (65세이상 보청기 지원, 홍익표 위성곤 유승희, 연간 720억) (16세 미만 입원진료비 면제로 연간 1140억)	18
의료법	15
국민연금법	13
영유아보육법	12
약사법	9
아동복지법	8
모자보건법	7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기초연금 및 기초생활보장 동시 지급, 연간 1조원)	6
노인복지법	6
식품위생법	6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5
국민건강증진법	5
사회보장기본법	4
장애인복지법	4
기초연금법	4
의료급여법	4
산업통상지원	96
전기사업법	15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법률	9
유통산업발전법	8
중소기업창업지원법	5
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	3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3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	3
안전행정	293
도로교통법	31

공직선거법	28
지방세특례제한법	21
지방세법	18
지방자치법	13
정부조직법	11
지방재정법	10
지방교부세법	9
정당법	7
지방공무원법	7
정치자금법	7
국가공무원법	6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6
민방위기본법	5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등지원특별법	5
지방세기본법	4
공무원연금법	4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4
여성가족	2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5
일제하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대한생활안정지원및기념사업등에관한법률	4
외교통일	62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4
여권법	3
한국국제협력단법	2
정무	139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18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10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8
제조물책임법	7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7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7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6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6
은행법	6
여신전문금융업법	4
정보	2
국가정보원직원법	1
국가 사이버안보에 관한 법률안	1
환경노동	208
근로기준법	27

고용보험법	19
최저임금법	1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4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12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11
청년고용촉진특별법	10
산업안전보건법	9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7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5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5
고용정책기본법	5
채용절차의공정화에관한법률	5
대기환경보전법	5

참고자료 #2 <신규(폐지) 법안발의 모습>

No	구분	의안명	대표	의원 수
1	법제사법	스토킹 처벌 및 방지에 관한 법률안	김정훈	10
2	법제사법	중재산업진흥에관한법률안	정부	
3	법제사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박범계	71
4	법제사법	납세자소송에 관한 특별법안	이상민	10
5	법제사법	집단소송법안	박영선	46
6	법제사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에 관한 법률안	노회찬	11
7	법제사법	공중이용시설 등의 안전관리위반범죄 처벌 특별법안	전해철	12
8	법제사법	고문·가혹행위로 인한 피해의 회복을 위한 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특례법안	인재근	56
9	법제사법	고문방지 및 고문피해자 구제·지원에 관한 법률안	인재근	56
10	법제사법	방위산업비리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안	민병두	14
11	법제사법	징벌적 배상법안	박영선	12
12	법제사법	노인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박명재	10
13	법제사법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남인순	12
14	법제사법	소비자집단소송법안	서영교	16
15	정무	주택담보대출의 부실화 방지에 관한 법률안	김영주	10
16	정무	공공재정부정청구금지및부정이익환수등에관한법률안	정부	
17	정무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안규백	18
18	정무	행정규제기본법 폐지법률안	김광림	14
19	정무	국민행복과 일자리 창출·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특별법안	김광림	122
20	기획재정	공공기관의 학력차별금지 및 기회균등보장에 관한 법률안	김해영	24
21	기획재정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	김경수	51
22	기획재정	사회적경제기본법안	윤호중	27
23	기획재정	최고임금법안	심상정	10
24	기획재정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	이명수	122
25	기획재정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이학재	125
26	기획재정	청년기본법안	신보라	122
27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	아리랑국제방송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박홍근	10
28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	소프트웨어교육 지원법안	송희경	26
29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	빅데이터의 이용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안	배덕광	14
30	교육문화관광체육	국토순례 지원에 관한 법률안	박정	10
31	교육문화관광체육	지방교육정책 지원 특별회계법안	한선교	17
32	교육문화관광체육	체육인 복지법안	조훈현	26
33	교육문화관광체육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법안	박홍근	10
34	교육문화관광체육	바둑 진흥법안	조훈현	30

35	교육문화관광체육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법률안	전재수	21
36	교육문화관광체육	학생의 안전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	김도읍	50
37	교육문화관광체육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안민석	11
38	교육문화관광체육	교과용 도서에 관한 법률안	박경미	17
39	교육문화관광체육	역사교과용도서의 다양성 보장에 관한 특별법안	도종환	40
40	교육문화관광체육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안	노웅래	10
41	교육문화관광체육	방과후 활동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전현희	17
42	교육문화관광체육	스포츠기본법안	한선교	10
43	교육문화관광체육	민간 연구 및 저술 활동 지원법안	박정	31
44	교육문화관광체육	국제관광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	이우현	10
45	교육문화관광체육	대학 구조개혁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김선동	13
46	교육문화관광체육	산악관광진흥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안	정부	
47	교육문화관광체육	기본학력보장법안	박홍근	12
48	교육문화관광체육	농어촌학교 지원 특별법안	강석호	10
49	교육문화관광체육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법안	한선교	13
50	교육문화관광체육	유교문화 계승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안	박덕흠	11
51	외교통일	조약의 체결·비준 절차 등에 관한 법률안	홍익표	11
52	외교통일	금강산 관광사업 중단 또는 5·24조치로 인한 남북경제협력사업자 등 손실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	원혜영	15
53	외교통일	남북경제협력사업 중단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안	홍익표	12
54	외교통일	개성공단 입주기업 등의 피해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심재권	62
55	외교통일	재외국민보호법안	김정훈	10
56	외교통일	조약의 체결·비준에 관한 민주적 통제를 위한 법률안	박주민	21
57	외교통일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윤후덕	14
58	외교통일	통일경제파주특별자치시의 설치 및 파주평화경제특별구역의 조성·운영과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박정	17
59	국방	군인연금법 중 사병복무기간 가산에서 제외된 퇴직군인의 연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안	안규백	14
60	국방	국군의 해외파견활동에 관한 법률안	김영우	11
61	국방	제2연평해전 전투수행자에 대한 명예선양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	심재철	12
62	국방	6·25 참전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안	윤후덕	10
63	국방	6.25전쟁 전후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안	김종태	11
64	국방	월남전 참전군인의 전투근무급여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안	이언주	11
65	국방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방지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안	김동철	24
66	국방	군사시설 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	변재일	12
67	안전행정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법률안	이현재	13
68	안전행정	국가기념일 등에 관한 법률안	백재현	10
69	안전행정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박완주	12

70	안전행정	어린이안전 기본법안	표창원	58
71	안전행정	장준하 사건 등 진실규명과 정의실현을 위한 과거사청산 특별법안	김해영	47
72	안전행정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회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김두관	10
73	안전행정	대한민국 국화에 관한 법률안	이명수	10
74	안전행정	자율방재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이철우	13
75	안전행정	범죄예방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	윤재옥	10
76	안전행정	소방청법안	이재정	22
77	안전행정	내무부 훈령 등에 의한 형제복지원 피해사건 진상 규명 법률안	진선미	73
78	안전행정	국민의 휴일에 관한 법률안	홍익표	10
79	안전행정	대한민국 국화에 관한 법률안	박완주	12
80	안전행정	대한민국 나라꽃에 관한 법률안	홍문표	11
81	안전행정	국경일 및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한정애	10
82	안전행정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양승조	10
83	안전행정	국경일 및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이찬열	12
84	안전행정	국경일 및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경대수	11
85	안전행정	울릉도·독도지역 지원 특별법안	박명재	14
86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수산기자재산업 육성법안	박지원	15
87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해조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윤영일	10
88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농어업회의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	김현권	15
89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농어업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황주홍	10
90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농어촌발전을 위한 공동모금 및 배분에 관한 법률안	황주홍	20
91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해양수산물과학기술육성법안	정부	
92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도서지역 대중교통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정유섭	10
93	산업통상지원	중소기업의 네트워크형 협력사업 촉진에 관한 법률안	윤영석	10
94	산업통상지원	액화천연가스 인수기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	강창일	10
95	산업통상지원	자율상권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이정현	12
96	산업통상지원	발명교육 활성화 지원법안	김규환	33
97	산업통상지원	전원개발촉진법 폐지법률안	우원식	52
98	산업통상지원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	성일종	10
99	산업통상지원	석유화학시설 및 석유비축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주승용	12
100	산업통상지원	청년창업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조경태	15
101	산업통상지원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안	우원식	11
102	산업통상지원	향토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황영철	13
103	보건복지	국립공공의료전담의과대학 설치 및 국립공공의료전담의과대학병원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	박홍근	10
104	보건복지	학대피해노인의 권리보호와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인재근	19
105	보건복지	항노화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윤종필	11

106	보건복지	보건의료인력 지원 특별법안	윤소하	10
107	보건복지	노인교육지원법안	김정훈	11
108	보건복지	의료기기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김기선	16
109	보건복지	나눔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정갑윤	32
110	보건복지	기부연금법안	김관영	12
111	보건복지	국립보건의료대학 및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	이정현	75
112	보건복지	보건의료 인력지원 특별법안	정춘숙	11
113	보건복지	첨단재생의료의 지원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김승희	10
114	보건복지	경로당 및 노인학교 지원법안	양승조	10
115	환경노동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서형수	22
116	환경노동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안	서영교	39
117	환경노동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안	홍영표	13
118	환경노동	생활화학용품 피해배상 및 구제에 관한 법률안	이연주	16
119	환경노동	가습기살균제 피해배상 및 구제에 관한 특별법안	이연주	16
120	환경노동	물산업진흥법안	곽상도	21
121	환경노동	산업현장일학습병행지원에관한법률안	정부	
122	환경노동	환경미화근로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안	김해영	22
123	환경노동	환경미화원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법률안	이정미	10
124	환경노동	유전자원의접근및이익공유에관한법률안	정부	
125	환경노동	생명안전업무 종사자의 직접고용 등에 관한 법률안	이인영	17
126	환경노동	산업안전보건범죄의 단속 및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심상정	10
127	환경노동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특별법안	이정미	11
128	국토교통	전통시장 내의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김광수	35
129	국토교통	대리운전업법안	원혜영	11
130	국토교통	빈집 등 소규모 주택정비 특례법안	이헌승	14
131	국토교통	빈집 등 정비에 관한 특별법안	이춘석	11
132	국토교통	물관리 기본법안	정우택	11
133	국토교통	4대강 사업 검증 조사·평가 및 인공구조물 해체와 재자연화를 위한 특별법안	홍영표	11
134	국토교통	노후주택 정비 특별법안	정운천	10
135	국토교통	전기시설 등의 지중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	박정	12
136	국토교통	해외 건설인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안	김성태	11
137	국토교통	자동차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권석창	12
138	국토교통	물관리 기본법안	함진규	10
139	국토교통	수자원의조사·계획및관리에관한법률안	정부	
140	국토교통	가야문화권 개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이완영	18
141	국토교통	수도권정비계획법 폐지법률안	송석준	10
142	정보	국가 사이버안보에 관한 법률안	이철우	122

〈폐지법률안 의안 현황〉

구분	의안명	대표발의	공동발의의원수
정무	행정규제기본법 폐지법률안	김광림	14
산업통상지원	전원개발촉진법 폐지법률안	우원식	52
국토교통	수도권정비계획법 폐지법률안	송석준	10

참고자료 #3 <대표발의 의안 수 최다 국회의원 명단>

(20대 국회 개원 후 9월 5일까지 발의한 의안 중 국회의원별 대표발의 의안 수)

박광온	73	백재현	14	이용득	9	정우택	7	정성호	6	권성동	4	전재수	3	이철규	2	박선숙	1
주승용	58	인재근	13	최명길	9	문미옥	7	표창원	5	윤재옥	4	이용호	3	임이자	2	박대출	1
이찬열	39	박주민	13	권미혁	9	노회찬	7	정운천	5	김상훈	4	박완수	3	유의동	2	우상호	1
김관영	36	조정식	13	강병원	9	문진국	7	이종명	5	김용태	4	최연혜	3	윤한홍	2	김영춘	1
최도자	34	변재일	13	한선교	9	성일종	7	이완영	5	김순례	4	김태흠	3	조배숙	2	이해찬	1
안규백	30	이언주	13	송옥주	9	김민기	7	김두관	5	김재경	4	추미애	3	김종석	2	유성엽	1
김삼화	28	홍영표	13	김병욱	9	나경원	7	정태욱	5	손혜원	4	김기선	3	김종훈	2	김정우	1
박정	27	오제세	12	심상정	9	신경민	7	안철수	5	이용주	4	윤종오	3	안호영	2	장석춘	1
황주홍	25	박남춘	12	김성태	9	경대수	7	김성찬	5	주광덕	4	송영길	3	윤영석	2	윤종필	1
김도읍	25	진선미	12	원혜영	9	기동민	7	김영진	5	이철우	4	오세정	3	여기구	2	곽대훈	1
김해영	24	김학용	12	추경호	9	최운열	7	손금주	5	곽상도	4	박인숙	3	신보라	2	정용기	1
민홍철	23	김광수	11	고용진	9	강창일	7	정유섭	5	백혜련	4	강석호	3	홍문종	2	김규환	1
노웅래	22	위성곤	11	이상민	9	송기석	7	조원진	5	민경욱	4	홍일표	3	윤상직	2	김영우	1
박용진	22	김태년	11	이종배	9	김종로	7	김병관	5	이훈	4	황희	3	이주영	2	이석현	1
홍익표	21	이동섭	11	박주선	8	신동근	6	박병석	5	임종성	4	서형수	3	권석창	2	이철희	1
박홍근	20	제윤경	11	이우현	8	하태경	6	김철민	5	김경수	3	정갑윤	2	정동영	2	최경환	1
양승조	18	서영교	11	박지원	8	박덕흠	6	김승희	5	김종민	3	이정현	2	김부겸	2	김정재	1
윤호중	18	이학재	11	이학영	8	박맹우	6	이정미	5	김정훈	3	문희상	2	윤상현	2	김선동	1
유승희	17	이명수	11	윤관석	8	박찬대	6	강길부	5	이헌승	3	김한정	2	장정숙	2	정진석	1
이춘석	16	권칠승	10	설훈	8	정춘숙	6	홍문표	5	박성중	3	엄용수	2	김진표	2	김성수	1
윤소하	16	채이배	10	박주현	8	장병완	6	송희경	5	김영주	3	송기현	2	유기준	1	원유철	1
박경미	15	박범계	10	김상희	8	조경태	6	홍의락	5	유재중	3	김종대	2	박재호	1	김종인	1
김현미	15	박순자	10	신용현	8	유동수	6	이현재	5	이만희	3	정인화	2	이진복	1	김세연	1
우원식	15	박영선	10	전해철	8	민병두	6	황영철	5	안상수	3	강훈식	2	김현아	1	박찬우	1
윤후덕	14	윤영일	10	함진규	8	배덕광	6	송석준	5	오신환	3	정재호	2	김종회	1	권은희	1
김동철	14	이개호	10	박완주	8	심재철	6	정종섭	5	김성식	3	이종걸	2	이은재	1		
남인순	14	이원욱	10	안민석	8	유은혜	6	김경협	5	김광림	3	금태섭	2	이은권	1		
소병훈	14	전혜숙	10	이재정	8	강효상	6	심재권	5	조승래	3	이종구	2	김영호	1		
한정애	14	이인영	10	도종환	7	김명연	6	추혜선	4	장제원	3	이채익	2	강석진	1		
박명재	14	신상진	10	주호영	7	전현희	6	김현권	4	조훈현	3	김종태	2	이장우	1		

국회의원에 대한 평가 방법이 개선되어야 함.

박광온 의원의 경우 본인이 대표 발의한 73개 의안을 포함하여 공동 발의한 의안은 304개에 달하고 있음. 주승용 의원은 327개의 의안에, 이찬열 의원은 516개 의안에 서명했음. 과연 본인이 서명한 의안의 법률명을 기억이나 하고 있을지 의문임.

법률개정을 많이 한 의원에게 좋은 평가를 주는 관행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음. 지금은 입법과잉시대이며 오히려 법안을 폐지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과제로 떠오름.

참고자료 #4 <상임위원회별 전부 또는 일부개정법률안(전체)>

(20대 국회 개원 이후 2016년 9월 5일까지, 국회가 구분한 상임위원회의 순서대로 정렬)

국회운영	58
국회법	23
국회의원수당등에관한법률	8
국회에서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7
인사청문회법	4
국회도서관법	2
저출산고령사회대책특별위원회	1
국가보훈처장박승춘해임	1
국가균형발전대책특별위원회	1
대통령등의경호에관한법률	1
미래일자리특별위원회	1
민생경제특별위원회	1
국회예산정책처법	1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	1
정치발전특별위원회	1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1
지방재정·분권특별위원회	1
평창동계올림픽및국제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	1
남북관계개선특별위원회	1
농협개혁을위한특별위원회	1
법제사법	179
형법	13
주택임대차보호법	1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10
상법	8
변호사법	8
민법	7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6
형사소송법	5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	5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	5
검찰청법	5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4
변호사시험법	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3
난민법	3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수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3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	3
통신비밀보호법	3
범죄피해자보호법	3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	3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별법	3
감사원법	3
법원조직법	3
사면법	3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2
군사법원법	2
이자제한법	2
법무사법	2
질서위반행위규제법	2
교통사고처리특별법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2
국적법	2
인신보호법	2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1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1
집단소송법안	1
4·16세월호참사초기구조구난작업의적정성에대한진상규명사건의특별검사수사 를위한국회	1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	1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에 관한 법률안	1
노인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안	1
사법시험법	1
징벌적 배상법안	1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1
균형법	1
공중이용시설 등의 안전관리위반범죄 처벌 특별법안	1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1
검사징계법	1
납세자소송에 관한 특별법안	1
소비자집단소송법안	1
부패재산의몰수및회복에관한특별법	1
소송촉진등에관한특별법	1
고문·가혹행위로 인한 피해의 회복을 위한 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특별 법안	1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1
군용물등범죄에관한특별조치법	1
스토킹 처벌 및 방지에 관한 법률안	1
치료감호법	1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1
특별감찰관법	1
법관징계법	1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1
민사소송등인지법	1
6개은행CD금리담합사건검찰수사	1
자동차등특정동산저당법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1
방위산업비리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안	1
형사보상및명예회복에관한법률	1
중재산업진흥에관한법률안	1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1
증권관련집단소송법	1
고문방지 및 고문피해자 구제·지원에 관한 법률안	1

정무

139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18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10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8
제조물책임법	7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7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7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6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6
은행법	6
여신전문금융업법	4
보험업법	3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	3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3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3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3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	2
국가보훈기본법	2
공적자금관리특별법	2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2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2
국립묘지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2
공익신고자보호법	2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2
대규모유통업에서의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2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	2
중소기업은행법	1
행정심판법	1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	1
상호저축은행법	1
금융회사의지배구조에관한법률	1
소비자기본법	1
기업구조조정촉진법	1
신용보증기금법	1
한국산업은행법	1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1
공공재정부정청구금지및부정이익환수등에관한법률안	1
신용협동조합법	1
주택담보대출의 부실화 방지에 관한 법률안	1
대리점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1
기술신용보증기금법	1
위싱턴추모벽건립지원	1
특수임무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1
국민행복과 일자리 창출·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특별법안	1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1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1
행정규제기본법 폐지법률안	1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1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	1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1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1

기획재정

255

조세특례제한법	63
국가재정법	33
소득세법	22
부가가치세법	16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15

상속세및증여세법	14
법인세법	13
국세기본법	12
국유재산특례제한법	6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5
부담금관리기본법	4
국가회계법	4
국가균형발전특별법	3
국세징수법	3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3
관세법	3
국고금관리법	2
개별소비세법	2
국유재산법	2
교육세법	2
한국은행법	2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2
담배사업법	2
농어촌특별세법	1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1
통계법	1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	1
조달사업에관한법률	1
관세사법	1
청년기본법안	1
국가채권관리법	1
2017년도에발행하는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채권에대한	1
2017년도에발행하는한국장학재단채권에대한	1
인지세법	1
사회적경제기본법안	1
조세범처벌법	1
공공기관의 학력차별금지 및 기회균등보장에 관한 법률안	1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1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	1
최고임금법안	1
세무사법	1
한국수출입은행법	1
국채법	1
물품관리법	1
수입인지에관한법률	1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	7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10
원자력안전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7
전기통신사업법	6
방송법	6
원자력안전법	5
이동통신단말장치유통구조개선에관한법률	4
과학기술기본법	3
방송통신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3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2
원자력시설등의방호및방사능방재대책법	2
국가정보화기본법	2
방송문화진흥회법	2
별정우체국법	2
전자문서및전자거래기본법	2
방송통신발전기본법	1
광주과학기술원법	1
전자서명법	1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1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1
아리랑국제방송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1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	1
울산과학기술원법	1
한국과학기술원법	1
원자력진흥법	1
빅데이터의 이용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안	1
2015회계연도한국방송공사	1
정보통신기반보호법	1
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법	1
한국교육방송공사법	1
소프트웨어교육 지원법안	1
2015회계연도한국교육방송공사	1
신고리5,6호기건설허가심사중단	1
교육문화관광체육	198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19

초·중등교육법	16
고등교육법	14
국민체육진흥법	8
학교보건법	7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7
사립학교법	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6
교육공무원법	5
문화재보호법	5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	5
유아교육법	4
학교급식법	4
교육기본법	4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4
관광진흥법	3
문화예술진흥법	3
지방대학및지역균형인재육성에관한법률	3
매장문화재보호및조사에관한법률	3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3
교육관련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특례법	2
자격기본법	2
평생교육법	2
저작권법	2
학교도서관진흥법	2
학교시설사업촉진법	2
재외국민의교육지원등에관한법률	1
기본학력보장법안	1
지역문화진흥법	1
대학 구조개혁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1
인성교육진흥법	1
대한민국예술원법	1
경제자유구역및제주국제자유도시의외국교육기관설립·운영에관한특별법	1
도서관법	1
국제관광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	1
독서문화진흥법	1
유교문화 계승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안	1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법안	1
잡지등정기간행물의진흥에관한법률	1
무형문화재보전및진흥에관한법률	1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안	1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1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법안	1
문화재보호기금법	1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1
국립대학법인서울대학교설립·운영에관한법률	1
국토순례 지원에 관한 법률안	1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	1
예술인복지법	1
민간 연구 및 저술 활동 지원법안	1
교원의지위향상및교육활동보호를위한특별법	1
학생의 안전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	1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1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1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	1
한국교직원공제회법	1
관광진흥개발기금법	1
교과용 도서에 관한 법률안	1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법률안	1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1
지방교육정책 지원 특별회계법안	1
산악관광진흥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안	1
국제올림픽조직위원회에대한故손기정선수의대한민국국적및한글이름표기	1
교육용전기요금인하	1
직업교육훈련촉진법	1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1
체육인 복지법안	1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에관한특별법	1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	1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	1
공교육정상화촉진및선행교육규제에관한특별법	1
역사교과용도서의 다양성 보장에 관한 특별법안	1
농어촌학교 지원 특별법안	1
국무위원후보자문화체육관광부장관조윤선	1
스포츠기본법안	1
과학교육진흥법	1
신문등의진흥에관한법률	1
바둑 진흥법안	1
한국관광공사법	1
방과후 활동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1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동계패럴림픽대회지원등에관한특별법	1

외교통일

62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4
여권법	3
한국국제협력단법	2
개성공단 입주기업 등의 피해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1
대한민국과아랍에미리트연합국간의범죄인인도조약	1
재외국민보호법안	1
국제개발협력기본법	1
대한민국과이란이슬람공화국간의범죄인인도조약	1
금강산 관광사업 중단 또는 5·24조치로 인한 남북경제협력사업자 등 손실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	1
외무공무원법	1
남북이산가족생사확인및교류촉진에관한법률	1
통일경제파주특별자치시의 설치 및 파주평화경제특별구역의 조성·운영과 지원 에 관한 특별법안	1
남북경제협력사업 중단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안	1
대한민국과에티오피아연방민주공화국간의소득에대한조세의이중과세방지와탈세 예방을위한협약	1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1
대한민국과타지키스탄공화국간의소득에대한조세의이중과세방지와탈세예방을위 한협약	1
대한민국정부와건지정부간의조세정보교환을위한협정	1
개성공단재가동및남북대화	1
대한민국정부와미합중국정부간의국제납세의무준수촉진을위한협정	1
재외공관공증법	1
대한민국정부와미합중국정부간의민간과평화적목적의항공및대기권과외기권의탐 사와이용에서의협력을위한기본협정	1
조약의 체결·비준에 관한 민주적 통제를 위한 법률안	1
파리협정	1
개성공단재가동및피해기업과노동자피해보상	1
해외이주법	1
대한민국정부와브루나이다루살람정부간의소득에대한조세의이중과세방지와탈세 예방을위한협정	1
대한민국과세르비아공화국간의소득에대한조세의이중과세방지를위한협약	1
대한민국정부와사모아독립국정부간의조세에관한정보교환을위한협정	1
대한민국과아랍에미리트연합국간의형사사법공조조약	1
대한민국정부와안도라공국정부간의조세정보교환에관한협정	1
대한민국과유럽연합간의대한민국의유럽연합위기관리활동참여를위한기본협정	1
대한민국정부와영국령버진제도정부간의조세정보교환에관한협정	1

대한민국과이란이슬람공화국간의형사공조조약	1
대한민국정부와인도공화국정부간의소득에대한조세의이중과세방지과탈세예방을 위한협정	1
배타적경제수역법	1
대한민국정부와일본정부간의'일본군위안부피해자문제에관한합의'무효확인및재 협상	1
아시아산림협력기구설립에관한협정	1
대한민국정부와저지정부간의조세정보교환을위한협정	1
영해및접속수역법	1
대한민국정부와조지아정부간의소득에대한조세의이중과세방지과탈세예방을위한 협정	1
일본정부의위안부관련'거출금'10억엔수령거부촉구및일본정부의'평화의소녀상'철 거요구중단	1
대한민국정부와중화인민공화국홍콩특별행정구정부간의소득에대한조세의이중과 세방지과탈세예방을위한협정	1
재외공관용재산의취득·관리등에관한특례법	1
대한민국정부와칠레공화국정부간의사회보장에관한협정	1
조약의 체결·비준 절차 등에 관한 법률안	1
대한민국정부와카메룬공화국정부간의투자증진및보호에관한협정	1
추락하는한국경제의활로를열기위한남북경제협력및개성공단재가동	1
대한민국정부와케냐공화국정부간의소득에대한조세의이중과세방지과탈세예방을 위한협약	1
통일교육지원법	1
대한민국정부와케냐공화국정부간의투자의증진및보호에관한협정	1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1
대한민국정부와퀘벡정부간의사회보장에관한양해서	1
한일정부간 「일본군위안부피해자문제합의무효」 선언및재협상	1
대한민국정부와투르크메니스탄정부간의소득에대한조세의이중과세방지과탈세예 방을위한협약	1
1991년6월21일서울에서서명된대한민국정부와폴란드공화국정부간의소득에대한 조세의이중과세회피와탈세방지를위한협약의개정의정서	1
대한민국정부와핀란드공화국정부간의사회보장에관한협정	1

국방

36

병역법	6
방위사업법	6
군인사법	6
군인연금법	2
군무원인사법	2
6·25 참전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안	1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	1

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	1
군공항이전및지원에관한특별법	1
6·25전쟁 전후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안	1
월남전 참전군인의 전투근무급여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안	1
군인연금법 중 사병복무기간 가산에서 제외된 퇴직군인의 연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안	1
제2연평해전 전투수행자에 대한 명예선양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	1
국군의 해외파견활동에 관한 법률안	1
6·25전사자유해의발굴등에관한법률	1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방지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안	1
통합방위법	1
군사기밀보호법	1
군사시설 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	1

안전행정

293

도로교통법	31
공직선거법	28
지방세특례제한법	21
지방세법	18
지방자치법	13
정부조직법	11
지방재정법	10
지방교부세법	9
정당법	7
지방공무원법	7
정치자금법	7
국가공무원법	6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6
민방위기본법	5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등지원특별법	5
지방세기본법	4
공무원연금법	4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4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3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	3
국경일 및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3
국민투표법	3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3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	2
공직자윤리법	2

대한민국 국화에 관한 법률안	2
개인정보보호법	2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	2
주민등록법	2
풍수해보험법	2
주민투표법	2
대한민국국기법	2
보행안전및편의증진에관한법률	2
도서개발촉진법	2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	2
상훈법	2
세종특별자치시설치등에관한특별법	2
소방공무원법	2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회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1
새마을금고법	1
민원처리에관한법률	1
세월호참사로희생된단원고기간제교사의순직인정	1
주민소환에관한법률	1
국가기념일 등에 관한 법률안	1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1
소방공무원보건안전및복지기본법	1
경찰청장후보자이철성	1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1
내무부 훈령 등에 의한 형제복지원 피해사건 진상 규명 법률안	1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1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1
화재예방,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1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1
어린이안전 기본법안	1
"6·15남북공동선언기념일"및"10·4남북정상선언기념일"의국가기념일지정	1
온천법	1
지방자치단체에두는국가공무원의정원에관한법률	1
울릉도·독도지역 지원 특별법안	1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1
위험물안전관리법	1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	1
유엔인권이사회에대한민국정부에대한평화적집회및결사의자유특별보고관보고서	1
권고사항이행	
6.15남북공동선언기념일'지정	1
자원봉사활동기본법	1
대한민국 나라꽃에 관한 법률안	1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용덕	1
자율방재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1
지방공기업법	1
장준하 사건 등 진실규명과 정의실현을 위한 과거사청산 특별법안	1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1
국경일에관한법률	1
지방분권및지방행정체제개편에관한특별법	1
재해구호법	1
경찰관직무집행법	1
전자정부법	1
범죄예방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	1
전직대통령예우에관한법률	1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	1
국민의 휴일에 관한 법률안	1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1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	1
청원경찰법	1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법률안	1
서해5도지원특별법	1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	1
행정사법	1
소방청법안	1
"2·28민주운동기념일"의국가기념일지정	1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	1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122

동물보호법	9
한국마사회법	4
친환경농어업육성및유기식품등의관리·지원에관한법률	4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4
농어업재해보험법	4
농지법	4
해양환경관리법	3
농어업재해대책법	3
자유무역협정체결에따른농어업인등의지원에관한특별법	3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	3
가축전염병예방법	3
4·16세월호참사진상규명및안전사회건설등을위한특별법	3

수산자원관리법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
축산법	2
식물방역법	2
항만법	2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2
가축 및 축산물 이력 관리에 관한 법률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2
항로표지법	2
산지관리법	2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2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1
수의사법	1
4·16 세월호 참사 피해 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1
국무위원 후보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	1
식품산업진흥법	1
도시지역 대중교통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1
초지법	1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
농업협동조합법	1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
식물신품종보호법	1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1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 활용에 관한 특별법	1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1
농어촌 구조 개선 특별회계법	1
민간인통제선이북지역의 산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	1
농수산물 품질 관리법	1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1
항만공사법	1
비료관리법	1
농림수산물 과학 기술 육성법	1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1
농어업회의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	1
산림보호법	1
식생활 교육 지원법	1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 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1
어선법	1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

연근해어업의구조개선및지원에관한법률	1
농어업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1
유전자변형농작물야외시험재배중단	1
선박투자회사법	1
종자산업법	1
항만운송사업법	1
농어촌발전을 위한 공동모금 및 배분에 관한 법률안	1
해양수산물육성법안	1
크루즈산업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	1
해운법	1
농어촌정비법	1
농어업경영체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	1
농업기계화촉진법	1
수산물질병관리법	1
수산업법	1
소금산업진흥법	1
농수산물생명자원의보존·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1
수목원·정원의조성및진흥에관한법률	1
해조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1
수산기자재산업 육성법안	1
수산물유통의관리및지원에관한법률	1

산업통상지원

96

전기사업법	15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법률	9
유통산업발전법	8
중소기업창업지원법	5
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	3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3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	3
도시가스사업법	2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	2
산업기술혁신촉진법	2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	2
발명진흥법	2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2
중소기업기본법	2
변리사법	2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	2

광업법	1
자율상권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1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	1
소상공인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	1
전원개발촉진법	1
송·변전설비주변지역의보상및지원에관한법률	1
중견기업성장촉진및경쟁력강화에관한특별법	1
송유관안전관리법	1
석유화학시설 및 석유비축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1
신고리원전5,6호기건설중단과탈원전에너지정책	1
고압가스안전관리법	1
중소기업의 네트워크형 협력사업 촉진에 관한 법률안	1
전원개발촉진법 폐지법률안	1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1
제품안전기본법	1
발명교육 활성화 지원법안	1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1
집단에너지사업법	1
중소기업기술보호지원에관한법률	1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1
기업활력제고를위한특별법	1
중소기업진흥에관한법률	1
향토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1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안	1
환경친화적자동차의개발및보급촉진에관한법률	1
청년창업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1
에너지이용합리화법	1
오존층보호를위한특정물질의제조규제등에관한법률	1
화학무기·생물무기의금지와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등의제조·수출입규제등에관 한법률	1
액화천연가스 인수기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	1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특별법	1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1
보건복지	200
국민건강보험법	18
의료법	15
국민연금법	13
영유아보육법	12

약사법	9
아동복지법	8
모자보건법	7
국민기초생활보장법	6
노인복지법	6
식품위생법	6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5
국민건강증진법	5
사회보장기본법	4
장애인복지법	4
기초연금법	4
의료급여법	4
의사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3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3
입양특례법	3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	3
장애인연금법	2
자살예방및생명존중문화조성을위한법률	2
노숙인등의복지및자립지원에관한법률	2
보건의료기술진흥법	2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	2
사회복지사업법	2
지역보건법	2
응급의료에관한법률	2
의료기기법	2
보건의료기본법	1
국립보건의료대학 및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	1
한센인피해사건의진상규명및피해자지원등에관한법률	1
보건의료인력 지원 특별법안	1
보건의료 인력지원 특별법안	1
보육정책정상화	1
학대피해노인의 권리보호와 지원에 관한 법률안	1
국립중앙의료원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	1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	1
대한적십자사조직법	1
노인교육지원법안	1
시체해부및보존에관한법률	1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1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1
축산물위생관리법	1

결핵예방법	1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	1
경로당 및 노인학교 지원법안	1
혈액관리법	1
아동의빈곤예방및지원등에관한법률	1
맞춤형보육시행연기및재검토	1
암관리법	1
발달장애인권리보장및지원에관한법률	1
공중위생관리법	1
국공립공공의료전담 의과대학 및 국공립공공의료전담 의과대학병원의 설치·	1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1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	1
기부연금법안	1
제대혈관리및연구에관한법률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1
첨단재생의료의 지원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1
구강보건법	1
치매관리법	1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1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1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1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1
항노화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1
긴급복지지원법	1
화장품법	1
의료사고피해구제및의료분쟁조정등에관한법률	1
나눔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1
의료기기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1

환경노동

208

근로기준법	27
고용보험법	19
최저임금법	1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4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12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11
청년고용촉진특별법	10

산업안전보건법	9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7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5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5
고용정책기본법	5
채용절차의공정화에관한법률	5
대기환경보전법	5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	4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3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3
공인노무사법	3
화학물질의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	3
환경영향평가법	3
환경정책기본법	2
소음·진동관리법	2
악취방지법	2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1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1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1
가습기살균제 피해배상 및 구제에 관한 특별법안	1
물산업진흥법안	1
산업현장일학습병행지원에관한법률안	1
직업안정법	1
환경보건법	1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	1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1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1
생활화학용품 피해배상 및 구제에 관한 법률안	1
국무위원후보자환경부장관조경규	1
석면피해구제법	1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안	1
산업안전보건범죄의 단속 및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1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특별법안	1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1
최저임금인상및공생적최저임금정책	1
수도법	1
국가기술자격법	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1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1
습지보전법	1

화학물질관리법	1
환경미화원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법률안	1
환경미화근로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안	1
미세먼지저감을통한국민건강실현	1
유전자원의접근및이익공유에관한법률안	1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1
생명안전업무 종사자의 직접고용 등에 관한 법률안	1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안	1
생물다양성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1

국토교통

137

자동차관리법	9
도로법	7
수도권정비계획법	6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6
공동주택관리법	6
공공주택특별법	5
주택법	5
건설산업기본법	5
공공기관지방이전에따른혁신도시건설및지원에관한특별법	4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4
공인중개사법	4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	4
건축법	3
주차장법	3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3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3
새만금사업추진및지원에관한특별법	2
물류시설의개발및운영에관한법률	2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특별법	2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2
궤도운송법	2
시설물의안전관리특별법	2
교통안전법	2
유료도로법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2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2
주거급여법	2
도시철도법	2
택시운송사업의발전에관한법률	2

물관리 기본법안	2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2
장애인·고령자등주거약자지원에관한법률	1
철도안전법	1
해외 건설인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안	1
가야문화권 개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1
빈집 등 정비에 관한 특별법안	1
노후주택 정비 특별법안	1
전통시장 내의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1
국토기본법	1
교통시설특별회계법	1
수도권정비계획법 폐지법률안	1
4대강 사업 검증 조사·평가 및 인공구조물 해체와 재자연화를 위한 특별법 안	1
수자원의조사·계획및관리에관한법률안	1
장기공공임대주택입주자삶의질향상지원법	1
대리운전업법안	1
전기시설 등의 지중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	1
신행정수도후속대책을위한연기·공주지역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위한특별법	1
항공안전법	1
기업도시개발특별법	1
주택도시기금법	1
물류정책기본법	1
지역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1
인천국제공항공사법	1
친수구역활용에관한특별법	1
공항소음방지및소음대책지역지원에관한법률	1
한국도로공사법	1
자동차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1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1
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	1
빈집 등 소규모 주택정비 특별법안	1

정보

2

국가정보원직원법	1
국가 사이버안보에 관한 법률안	1

여성가족

2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5
일제하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대한생활안정지원및기념사업등에관한법률	4
청소년복지지원법	2
청소년기본법	2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2
한부모가족지원법	2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	1
가족친화사회환경의조성촉진에관한법률	1
청소년보호법	1
양성평등기본법	1
건강가정기본법	1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1
아이돌봄지원법	1

